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여전히  
고통스럽다...”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여전히 고통스럽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 목 차

용어 / 5

1. 서문 / 6

2. 방법론 / 8

3. 배경 / 9

4.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 12

4.1 과밀화, 비위생적 환경, 지배적인 남성 교도관 비율 / 12

4.2 식량 박탈 / 14

4.3 심문 중 구타, 처벌로서의 구타, 좌식 자세 강제 / 16

4.4 강제 노동 / 18

4.5 성폭력 / 20

4.5.1 강제 전신 탈의와 강도 높은 신체 수색 / 20

4.5.2 강간 / 22

4.5.3 강제 낙태 및 영아 살해 / 24

4.6 보건 의료 접근성 / 26

4.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27

5. 결론 / 30

6. 권고 / 31

별첨 1: 법적 제도 / 36

별첨 2: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집한 목격자 진술 / 40

## 구금 시설 담당 부처\*

### 사회안전성

사회안전성은 국내 치안을 담당한다. 당국이 정치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일반 범죄의 수사 및 예심을 관할한다. 사회안전성은 구류장, 교화소, 집결소 및 노동단련대를 운영한다.

### 국가보위성

국가보위성은 당국이 정치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한 범죄의 수사 및 예심을 관할한다. 국가보위성은 북중 국경 지대에 위치한 구류장 및 집결소를 운영하며, 관리소를 운영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 시설 분류

### 교화소

당국이 정치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일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개인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교화소 총 19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1</sup>

### 구류장

재판 전 절차를 거치는 중인 개인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 모두 별도의 도·시·군 및 이하 행정 구역 단위에서 구류장을 운영한다.

### 집결소

이동 제한을 어긴 개인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사회안전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9개 도별로 집결소를 하나씩 운영하며, 따라서 최소 9개 집결소를 운영한다. 중국과 근접한 지역에서 국가보위성이 집결소를 추가적으로 지어 최소 9개를 운영 중에 있다.

### 노동단련대

재판 혹은 행정 절차상 유죄 선고를 받은 개인을 구금하는 시설로, 6개월 이하 노동형으로 교화시키려는 목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노동단련대 개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 관리소

정치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개인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관리소 다섯 곳이 운영되고 있다. 당국은 관리소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sup>1</sup>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7, 91쪽.

\*[번역주] 부처명은 가장 최신 정보를 반영하였다. 다만 진술 자료에서는 “사회안전성”을 “안전부”, “국가보위성”은 “보위부”로 칭한 사례가 대다수이며 이를 그대로 두었다. 아울러 “사회안전성” 관계자는 “보안원”으로 “국가보위성” 관계자는 “보위원”으로 통일했다.

---

# 1. 서문

1. 본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송환된 후 구금된 여성이 경험하는 인권 침해 혐의를 서술한다. 본 보고서는 유엔 총회 결의 48/141이 인권최고대표에 부여한 위임권한에 의거하며,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5/25에 따른다. 인권이사회 결의 25/25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하여금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다음 의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감시 및 기록을 강화하여 반드시 책임 규명이 이뤄지도록 하며,
  - 유관국 정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역량 강화 노력을 도모하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해 대중이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노력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 설립 이후 70여 년 간 외부로부터 폐쇄된 사회로 유지됐다. 공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출국하는 행위는 국내법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며, 허가없이 출국한 이들은 학대, 체포 및 강제 송환의 위험을 안고 위험한 여정을 이어간다. 강제 송환된 이후 장기간 미결구금 및 투옥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sup>2</sup>는 201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송환된 이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인권 침해가 만연하고 체계적이며, 반인도범죄에 준한다고 결론내렸다.<sup>3</sup>
3.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려고 시도하다 체포된 후 송환된 여성이 겪는 인권 침해를 세부적으로 살폈다. 이들 여성은 성폭력을 비롯한 기타 굴욕적인 행위를 경험하고,<sup>4</sup> 송환된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 낙태가, 이들 자녀를 대상으로는 영아 살해가 자행된다.<sup>5</sup> 본 보고서는 인권 침해 행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송환되고 구금된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핀다. 아울러 여성 구금자와 관련하여 전 세계에 따른 국가의 인권 의무도 고려한다.
4. 본 보고서에 기록된 관행대로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의거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약속한 바를 준수하지 않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조한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와도 상충한다.<sup>6</sup>
5. 근래 몇 년 간 정부는 인권 상황 개선 조치를 취했는데, 국내법을 개정하고 인권조약기구 및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를 포함하여 유엔 인권 메커니즘 참여를 확대했다. 다만 해당국 정부는 국가로서 국제 인권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령 국민이 기본권을 평화롭게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구금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침해 건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본 보고서가 개

---

<sup>2</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2/130에 의거하여 설립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체계적으로 자행된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고, 특히 반인도범죄에 준할 수 있는 침해 혐의에 대해 완전하게 책임을 규명하려는 의도로 설립됐다.

<sup>3</sup> A/HRC/25/CRP.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상세 보고서*, [이하 “조사위원회”], 2014년 2월 7일, 문단 380-492 및 문단 1098-1114.

<sup>4</sup> 각주 3, 조사위원회, 문단 415-422.

<sup>5</sup> 각주 3, 조사위원회, 문단 424-434.

<sup>6</sup> CEDAW/C/PRK/2-4, *협약 제 18조에 의거하여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 심의 제 2, 3, 4차 당사국 보고서 제출 기한 201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6년 6월 1일 제출*, A/HRC/42/10/Add.1,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실무 그룹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9년 8월 28일*.

팔한 여성 구금자의 인권과 젠더에 따른 필요(needs)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더하여 인권 침해를 저지른 개인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한다. 이때 여성과 남성 모두가 구제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젠더별로 세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한 해당국 정부가 법집행 및 사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성 있는 인권 표준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젠더를 고려하여 구금시설 내 환경을 개선하고,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미결구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6. 본 보고서가 파악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 간 협력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구금시설 내 인권 준수 정도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협력 부문을 시급하게 고려해야 한다.
7. 본 보고서는 실제 혹은 추정되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보복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개인을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재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도록 여타 회원국에 촉구한다.<sup>7</sup>
8.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인권이사회 결의 34/24와 40/20에 의거하여 향후 책임 규명 절차에 활용할 수 있을만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부분을 차지한다. 해당 결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사법적 책임 규명 전문가가 모든 정보와 진술 자료를 검토하여, 향후 책임 규명 절차에 활용할 수 있을만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한다.
9. 본 보고서에 언급된 인권 침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여 책임 규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길 회원국에 촉구한다. 전세계 피해자 및 이들 대리인이 보편관할권의 원칙에 의거하여 책임 규명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

<sup>7</sup>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생명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당사국은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개인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6조에서 명시하는 생명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불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안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생명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 36호, 문단 30.

---

---

## 2. 방법론

10. 본 보고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수집한 정보를 포함하여 여러 출처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심층 면담의 경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구금된 여성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여성은 최종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하여, 국외에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을 진행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한 전 정부관계자 뿐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여성과 협력하는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했다. 더하여 기관, 싱크탱크 및 비정부기구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공개된 정보도 반영하여 분석했다.<sup>8</sup>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수집한 정보를 검토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법과 만델라 규칙 및 방콕 규칙을 포함하여 국제 인권 표준 준수 여부를 살폈다.<sup>9</sup>
11.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모든 면담을 기밀로 유지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나가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본 보고서는 면담대상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동의를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 진술을 포함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방법론에 따라 면담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을 비롯한 기타 세부 정보는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을 통해 수집한 혐의를 확인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가령 현장에서 감시하거나 정부관계자 및 현 구금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개별 진술의 신뢰도와 신빙성을 평가했다. 진술 자체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검토하고, 또한 유사한 사실과 유형을 언급한 다른 진술과의 일관성도 검토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가 편견을 가지고 진술했을 수 있다는 점과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종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결론에 도달했다.
13.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송환된 여성이 정치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일부 경우, 관리소에 수감됐다고 불만만 목격자 진술을 수집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한 여성을 직접 면담하지는 못했다.
14. 여성과 남성은 체포 및 구금됐을 때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의 인권 침해를 경험한다. 본 보고서는 여성 구금자가 경험하는 취약성을 세부적으로 살핀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남성 이탈자를 충분히 만날 수 없는 상태로, 따라서 남성 이탈자 경험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
15.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 발간 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본 보고서를 전달했다. 해당국 정부는 본 보고서를 전면 거부했다.

---

<sup>8</sup> 다음 참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인권백서 2017, 데이비드 호크,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의 감춰진 수용소 IV. 젠더 역할 및 수감자 실종”(2015),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9”.

<sup>9</sup>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은 유엔 총회에서 1957년 처음 채택됐다. 이후 개정을 거쳐 낸슨 만델라 규칙[이하 “만델라 규칙”]으로 2015년 채택됐다. 구금 시설 내 대우와 관련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기준이며, 수감자 처우를 평가하려는 목적의 감시 및 점검 메커니즘에서 참고하는 주요 기준이다. 여성 수용자 처우와 여성 범죄자 사회 내 처우에 관한 규칙[이하 “방콕 규칙”]은 유엔 총회에서 2010년 12월 채택됐고, 구금된 여성의 성별에 따른 특징 및 필요와 관련한 기준을 정립했다.

### 3. 배경

16. 국외로 출국하고자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된다. 이민법은 출국에 필요한 여권과 여행 허가 발급을 보장한다.<sup>10</sup> 하지만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실제로는 정부에 충성심이 높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지금이 충분한 이들만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파악된다.
17. 따라서 많은 이들이 변칙적이며 비합법적으로 북중 국경을 넘는다. 형법에 따르면 불법 월경은 범죄 행위로 최대 1년 징역형, 또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sup>11</sup> 형법은 정상이 무거운 경우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으나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으로 가려 했거나 길다고 판단될 기간 동안 외국에 머물거나 혹은 타인의 월경을 도왔을 경우 더 무거운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경우 구금자에 조국반역죄를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국반역죄의 경우 최소 노동교화 5년형, 최대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sup>12</sup>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정부의 정당성에 도전한다고 판단될만한 행위를 한 이는 관리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18. 비밀리에 국경을 오가는 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근을 겪었던 1990년대 중반 증가했다. 북중 국경 지대에 위치한 지역에 기근에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해당 지역 거주자는 때때로 잠시라도 국경을 넘어 식량을 구하거나 비공식 무역에 뛰어들 수 밖에 없었다. 대략 1999년 이후 상황이 나아졌고, 국경을 넘나드는 비공식 경제 활동이 계속해서 확대되며 물물교환 또는 소규모 무역이 이뤄졌다. 비공식 무역에 종사하는 이들은 대체적으로 기혼 여성인데, 남성과 달리 국가가 공식적으로 상근직에 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위원회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국가가 배정한 직업에 종사해야 하는 조건과 이동 제한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했다. 남성은 국가가 일자리로 배정한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직의 고용주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성 다수는 국가가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에 고용되지 않아, 남성에 비해 오랜 기간 들키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다. 아마도 그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비울적으로 더 많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하는 것일 수 있다.<sup>13</sup> 여성은 또한 인신매매에 취약하며, 대체적으로 강제결혼이나 매춘과 같은 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가 이뤄진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취약한 지위뿐 아니라 재송환의 위험 때문이기도 하다.<sup>14</sup>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많은 경우 경제적 기회와 더불어 해외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에 이탈한다. 또한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한 경우도 있다. 이탈한 이들 다수는 해외에 정착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고, 이들과 재결합을 희망했다. 당국의 박해 때문에 이탈한 이들도 있다. 과거 이탈을 시도했다가 투옥됐고, 석방된 후 더 심한 감시와 차별을 경험한

<sup>10</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1996년 채택 후 1999년 및 2012년 개정) 제 9조-제12조 참조.

<sup>11</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2015년 개정), [이하 "형법"] 제 221조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sup>12</sup> 상동 제 63조.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을 면담하지 못했다. 하지만 복수의 면담 대상자는 관리소에 구금됐던 이들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sup>13</sup> 각주 3, 조사위원회, 문단 365 및 377.

<sup>14</sup> 각주 3, 조사위원회, 문단 491.

---

이들을 포함한다. “불법” 월경을 선택한 이유와 상관없이 이들 모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된 후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을 위험이 높다.

20. 매년 변칙적으로 국경을 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전달된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답변하길,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총 6473명이 공식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다녀왔다고 보고했다. 더해서 이들 대다수가 경제적 사유로 국외에 다녀오거나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했다.<sup>15</sup>
21.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1047명이 대한민국에 정착했고, 이 중 (80.7퍼센트인) 845명이 여성이다.<sup>16</sup> 대한민국 입국자 수는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정점을 찍었는데, 매년 2500명 내지 3000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국경 인근 규제 및 경비를 강화하여 이탈을 방지하고자 했다. 가령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목격자에 따르면 국경 지역 이동 제한이 강화됐고 국경을 따라 철조망과 물리적 장벽이 추가적으로 설치됐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국제전화를 하고 체포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적용했다고도 언급했다.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하려는 이들은 많은 경우 인신매매자에 기대어 국경을 넘는데, 이들 인신매매자는 사업 목적의 브로커로 위장하는 사례가 흔하다. 국경 감시가 강화되어 당국의 눈에 띄지 않음에 따라 위험이 커지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하려는 이들 대다수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브로커 비용도 올라갔다. 일부 경우 국경 지역에서 지인이나 낯선 사람이 수입이 좋은 일자리를 약속하며 여성에게 접근했다. 돈을 벌어서 브로커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이 자신도 모르는 새 강제결혼, 성착취, 또는 헐값에 담보노동을 하도록 매매된다. 사람들은 강제송환의 위험 때문에 인신매매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착취에 더욱 취약하다. 2011년 국경을 건넌 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국경을 넘어서 중국 요녕성에 있는 남자 집으로 갔다. 브로커였던 것 같다. 일주일 정도 그 집에 있었다. 그리고 다른 남자가 왔는데, 그때서야 그 남자한테 내가 팔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남자 집에 나를 데려갔는데, 남자도 집도 싫었다. 브로커에게 전화해서 싫다고 했지만 브로커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sup>17</sup>*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되는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에서 운영하는 국경 초소를 통해 이송된다.<sup>18</sup> 먼저 국경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국가보위성 산하 구류장에 구금된다. 구류장에서 송환된 개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보위원이 송환된 이들을 수색하고 조사한다. 많은 경우 강제 송환된 여성은 체강을 포함

---

<sup>15</sup> CEDAW/C/PRK/Q/2-4/Add.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 답변”, 2017년 7월 5일.

<sup>16</sup> 대한민국 통일부, 다음 참조: [https://www.unikorea.go.kr/eng\\_unikorea/relations/statistics/defectors/](https://www.unikorea.go.kr/eng_unikorea/relations/statistics/defectors/)

<sup>17</sup> KOR/17/0064.

\* (번역주) 국가보위성은 중앙 기관을 지칭하며, 중앙 이하 단위를 “성”이 아닌 다른 용어로 지칭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 기관 및 중앙 이하 단위를 모두 국가보위성으로 통칭한다.

<sup>18</sup>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함경북도 내 청진, 회령, 무산 및 온성, 량강도 내 혜산, 자강도 내 만포, 평안북도 내 신의주 등의 장소로 송환됐던 여성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한 강도 높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색을 받고 조사 과정에서 구타를 당한다.<sup>19</sup> 초기 조사는 우선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한 이유를 파악하고, 국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이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된다.

24. 보위원이 구금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탈했고 해외에 장기간 머물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경우라면, 해당 구금자는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신 일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사회안전성\*이 운영하는 구류장이나 집결소로 이송된다. 이후 대체적으로 등록된 거주지 보안원이 와서 데려갈 때까지 국경 지역에 위치한 구류장 또는 집결소에 구금된다. 구류장이나 집결소에 구금되는 기간은 수 주 내지 수 개월에 이르는데, 보안원이 언제 와서 데려갈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5.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회안전성이 운영하는 구금시설로 이송된 이후 구금자는 또 한번 강도 높은 나체 수색과 심문을 받는다. 이후 재판없이 최대 6개월 간 구금 상태에서 단기 노동에 처해지는 형을 받을 수 있다. 조사담당자가 6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판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배석한다. 재판은 시장이나 학교 앞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이뤄지기도 하며, 이후 로동단련 대나 교화소에서 더 긴 시간 형을 살도록 선고받을 수 있다.<sup>20</sup> 이러한 재판은 예외없이 국제 표준에 따른 공정한 재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sup>21</sup>
26. 대한민국에 가려고 했다거나 대한민국 국적자와 접촉하려는 의도로 해외로 나간 경우를 포함하여 더 중대한 정치적 성격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구금자는 국가보위성에 남아 구금된다. 함께 구류장에 구금됐던 이들 진술에 따르면, 더 중대한 정치적 성격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구금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관리소 다섯 곳 중 한 곳에 수감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관리소 존재를 부인하며, 형사소송법도 관리소를 언급하지 않는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에 관리소를 경험한 여성 이탈자를 면담하지 못했다.

<sup>19</sup> 본 보고서 제 4장 참조.

\* (번역주) 사회안전성은 중앙 기관을 지칭하며, 중앙 이하 단위를 “성”이 아닌 다른 용어로 지칭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 기관 및 중앙 이하 단위 기관을 모두 사회안전성으로 통칭한다.

<sup>20</sup> KOR/17/0001, KOR/17/0007, KOR/17/0045, KOR/17/0014, KOR/17/0049, KOR/17/0062. 본 보고서에 언급된 이같은 형식의 일련번호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밀을 유지하여 수행한 면담을 지칭한다.

<sup>21</sup> 본 보고서 제 4.7장 참조.

## 4.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27. 여성 구금자는 비인도적인 환경에 구금되고 식량을 박탈 당하며, 고문 및 학대를 당하고,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성폭력을 비롯한 젠더에 따른 폭력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다. 이는 국제 인권 규범 및 표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에 반한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이들에게 적용되는 사법 절차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6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성과 보고서를 제출했다.<sup>22</sup> 해당국 정부는 보고서에 “모든 사법 절차는 철저히 법을 준수하여 시행”되며, 신체 수색, 임신 중 취급 및 심문을 포함하여 수사 및 예심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항 모두를 준수한다고 언급했다.<sup>23</sup> 하지만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여러 인권 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29.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아래 명시된 장소를 포함하여 구금시설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일관된 양상의 인권 침해가 자행됐음을 보여주는 상당한 분량의 정보를 기록했다.
- 량강도 내 혜산시 및 보천군, 평안남도 내 개천시, 평안북도 내 신의주시, 함경북도 내 회령시 구금시설에서 영양실조 발생
  - 량강도 내 혜산시 및 보천군, 평안북도 내 신의주시, 함경북도 내 회령시 및 온성군 구금시설에서 구타 및 기타 폭력 사용
  - 량강도 내 혜산시, 평안남도 내 개천시 구금시설 내 과밀화 및 비위생적 환경

### 4.1 과밀화, 비위생적 환경, 지배적인 남성 교도관 비율

30.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피해자와 목격자에 따르면 구류장과 집결소 내 환경은 국제 인권 규범 및 표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10조는 당사국 모두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도록 보장할 것을 의무화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해석에 대한 권위있는 지침을 제시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자유가 박탈당한 이는 “자유를 박탈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 이외의 다른 어떠한 곤경이나 압력도 당하지 않도록”한다고 언급한다. 아울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존엄성은 자유로운 이들의 그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보장”한다고 명시한다.<sup>24</sup>
31. 만델라 규칙은 “수감자에게 제공된 거주 설비와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보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후 조건 특히 공기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다.<sup>25</sup> 만델라 규칙은 또한

<sup>22</sup> CEDAW/C/PRK/2-4 및 CRC/C/PRK/.

<sup>23</sup> CEDAW/C/PRK/Q/2-4/Add.1, 문단 76.

<sup>24</sup>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제 21호: 제 10조(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인도적 처우), 1992년 3월 13일, 문단 3.

<sup>25</sup> 각주 9, 만델라 규칙, 제 13조.

위생(화장실 및 목욕시설),<sup>26</sup> 적절한 식량과 물,<sup>27</sup> 여가시간과<sup>28</sup> 관련하여 국제 표준을 제시한다.

32.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여성은 일관되게 구류장, 집결소 및 교화소 구금 조건이 과밀화와 비위생적인 조건 등 비인도적이었다고 진술했다.<sup>29</sup> 특정 크기 공간 내 구금자 수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부 여성은 15 평방제곱미터 공간에 최대 20명이 구금됐다고 진술했다.<sup>30</sup> 구류장에서 여성은 자연광이나 신선한 공기를 하루 중 아주 잠깐 쬐거나 혹은 아예 쬐지 못한다고 파악됐다.<sup>31</sup>
33.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 범죄자 사회 내 처우에 관한 규칙(이하 “방콕 규칙”) 제 5조는 “여성 수감자 거주 시설은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기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등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청결 필요(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과 물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한다.<sup>32</sup> 여성은 기본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정도의 물을 제공받지 못하고, 목욕을 하거나 세탁을 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sup>33</sup> 대다수가 비누, 화장지 및 기타 기본적인 세면도구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sup>34</sup> 생리대가 제공되지 않아 옷을 일부 찢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sup>35</sup> 적절한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서 신체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sup>36</sup> 심각한 건강 문제가 야기됐고, 생리 주기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sup>37</sup> 많은 경우 감방 내에 화장실이나 양동이만 비치됐고 낮은 높이의 장벽만 가림막으로 설치됐다.<sup>38</sup> 구금자는 화장실이나 양동이 사용 전에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했는데, 항상 허락해주지도 않았다.<sup>39</sup> 2015년에 구금됐던 여성은 아래와 같이 상황을 묘사했다.

*“[용변이] 급하면 앉은 자리에서 볼일을 봤다. 봉지 안에 볼일을 보기도 했는데,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꼭 묶었다. 구금자는 그것 때문에 구타를 당할 수도 있다... 자기 자리에서 용변을 보고 냄새가 심하면, 계호원이 감방으로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고 그 사람을 불러냈다...”*<sup>40</sup>

한 여성은 2015년 사회안전성 구류장에 구금됐었고 남성 교도관이 앞에 있어서 씻을 때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

<sup>26</sup> 상동 제 15조-18조.

<sup>27</sup> 상동 제 22조.

<sup>28</sup> 상동 제 23조.

<sup>29</sup> KOR/18/0050, KOR/19/0016, KOR/19/0051, KOR/18/0078, KOR/18/0079, KOR/19/0011, KOR/19/0004, KOR/18/0029, KOR/18/0075, KOR/18/0058, KOR/19/0036, KOR/19/0044, KOR/18/0032, KOR/18/0077, KOR/19/0037

<sup>30</sup> KOR/17/0048, KOR/17/0049.

<sup>31</sup> KOR/19/0002, KOR/19/0010, KOR/19/0011.

<sup>32</sup> 여성 수용자 처우와 여성 범죄자 사회 내 처우에 관한 규칙(방콕 규칙)은 유엔 총회에서 2010년 12월 21일 결의안으로 채택(A/RES/65/229)됐다.

<sup>33</sup> KOR/17/0019, KOR/17/0048, KOR/17/0062, KOR/18/0009, KOR/19/0011, KOR/18/0029, KOR/19/0036, KOR/18/0031, KOR/18/0032, KOR/19/0037, KOR/18/0027.

<sup>34</sup> KOR/18/0050, KOR/19/0010, KOR/18/0009, KOR/19/0011, KOR/19/0004, KOR/18/0035, KOR/18/0077, KOR/19/0037

<sup>35</sup> KOR/17/0007, KOR/17/0045, KOR/17/0048.

<sup>36</sup> KOR/18/0050, KOR/18/0053, KOR/19/0002, KOR/19/0011, KOR/19/0004, KOR/18/0074, KOR/18/0029, KOR/19/0004, KOR/18/0029, KOR/18/0075, KOR/19/0027, KOR/19/0046, KOR/19/0010, KOR/17/0123, KOR/19/0032, KOR/19/0036, KOR/18/0031, KOR/18/0032, KOR/19/0037, KOR/19/0013, KOR/18/0027.

<sup>37</sup> KOR/18/0009, KOR/18/0035, KOR/17/0001, KOR/17/0049, KOR/17/0052, KOR/17/0057.

<sup>38</sup> KOR/19/0011, KOR/19/0001, KOR/18/0031, KOR/18/0032, KOR/18/0077, KOR/18/0027.

<sup>39</sup> KOR/18/0050, KOR/19/0002, KOR/19/0003, KOR/19/0001, KOR/19/0036, KOR/18/0027.

<sup>40</sup> KOR/17/0049.

---

했다고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변기 위에 [응크리고 앉아서] 씻었고 옆에 있는 수도꼭지를 사용했다. 계호가 우릴 보지 못하도록 몸을 응크려야 했다.”<sup>41</sup>

34. 구금자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이고 사생활을 침해 당하는 것에 더하여, 교도관으로부터 공공연하게 괴롭힘과 망신을 당했다. 한 여성은 2009년 구금됐던 경험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감방 안에서 씻어야 했고, 계호원이 씻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못 보게 하려면 변기 위에 무릎을 구부리고 서서 양동이로 물을 퍼서 써야 했다. 비누는 없었고 물도 차가웠다. 씻을 때 아무리 안보이게 하려 해도 계호원이 가슴과 어깨 위는 볼 수 있었다... 계호원이 감방으로 가까이 와서 더 숨으려고 하면, 계호원이 ‘뭘 그렇게 숨기냐, 젖꼭지 밖에 더 되냐’라고 했다.”<sup>42</sup>

35. 과거 구금됐던 이들은 여성과 남성은 분리되어 구금되지만, 교도관은 모두 남성이라고 진술했다.<sup>43</sup> 국제 표준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기관에 구금되도록 하며, 여성 구금자는 반드시 여성 담당자가 관리하도록 한다.<sup>44</sup> 만델라 규칙은 수감 시설 내 여성 구금자가 있는 구역은 반드시 여성 직원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여성 직원의 동반없이 남성 직원이 여성 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sup>45</sup> 최소한으로 충족시켜야 할 표준으로 또한 여성 구금자 담당자는 전일제 직업 교도관을 배치하며 이들은 젠더별 필요과 여성 보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여성 구금자 인권을 반드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sup>46</sup>

## 4.2 식량 박탈

36. 만델라 규칙 제 22조는 “교정당국은 수감자 전원에게 통상적인 시간에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을 갖춘 잘 조리된 음식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수감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식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37. 여성 구금자 전원은 구금 기간 동안 극도로 부적절한 양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식사를 제공받아, 높은 비율의 구금자가 영양실조에 걸리고<sup>47</sup> 생리 주기에 영향을 받았다고<sup>48</sup> 보고했다. 과거 구금됐던 이들에 따르면 사회안전성

---

<sup>41</sup> KOR/19/0011.

<sup>42</sup> KOR/17/0062.

<sup>43</sup> KOR/18/0053, KOR/18/0009, KOR/19/0011, KOR/19/0001, KOR/18/0035, KOR/18/0031, KOR/18/0027.

<sup>44</sup> 각주 9, 만델라 규칙, 제 11조.

<sup>45</sup> 상동 제 81조.

<sup>46</sup> 상동 제 74조 및 각주 9, 방콕 규칙, 제 42조 및 43조.

<sup>47</sup> KOR/19/0051, KOR/19/0003, KOR/18/0009, KOR/19/0011, KOR/19/0004, KOR/19/0044, KOR/18/0029, KOR/18/0035, KOR/18/0075, KOR/19/0027, KOR/19/0051, KOR/19/0032, KOR/19/0036, KOR/18/0031, KOR/18/0032, KOR/19/0043, KOR/19/0042, KOR/19/0034, KOR/19/0015, KOR/18/0027.

<sup>48</sup> 각주 37.

과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구금시설 모두는 하루에 두 번 혹은 세 번 강냉이나 강냉이밥을 소량 제공했다.<sup>49</sup> 일부 구류장에서는 구금자 가족이 음식을 가져오도록 허용했다고 알려지는데, 구금자가 등록된 거주지로 이전된 이후에만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가족 면회가 없는 구금자는 특히 영양실조에 취약하다.<sup>50</sup>

38. 식량 박탈로 인한 영향이 로동단련대, 집결소 및 교화소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곳에서는 여성 구금자를 강도 높은 노동에 동원한다.<sup>51</sup> 사회안전성 교화소에 2017년 구금됐던 한 여성의 다음 진술에 의하면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양실조에 걸린 구금자를 보내는 교화소 반이 따로 있었다. 일을 적게 해도 됐고 연두부를 조금 더 받았다.”<sup>52</sup>*

39. 국가보위성 구류장에 2016년 구금됐던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보위부에서 강냉이를 줬다. 매끼 강냉이를 한 움큼 정도 줬다. 하루 세 끼를 줬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많았다. 나도 점점 약해졌고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sup>53</sup>*

한 여성은 2013년 구금 경험이 있고, 보위원이 알맹이 수를 세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매끼당 200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sup>54</sup> 2014년 구금됐던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강냉이도 주지 않았다. 작은 감자 다섯 알을 먹고 간신히 살았다. 너무 배가 고팠다. 계호원이 접시를 씻은 물에 남은 입쌀 등도 먹었다.”<sup>55</sup>*

40. 식량 박탈 정도가 너무 심각하여, 일부 구금자는 굶주림으로 사망했다. 한 여성은 2015년 사회안전성 교화소에 2015년 구금됐고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42살 정도 먹은 \*\*\*\*\*이 내가 막 교화소에 갔을 때 죽었다. 영양실조 때문에 죽었다... 교화소에 있는 동안 대여섯명이 죽었다. 대부분 영양실조 때문에 사망했다.”<sup>56</sup>*

한 구금자는 2012년 동료 구금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sup>49</sup> KOR/16/0020, KOR/17/0007, KOR/17/0020, KOR/17/0019, KOR/17/0060.

<sup>50</sup> KOR/19/0003, KOR/19/0044, KOR/18/0029, KOR/18/0075, KOR/18/0031, KOR/19/0043, KOR/19/0034.

<sup>51</sup> 본 보고서 문단 46–48 참조.

<sup>52</sup> KOR/19/0051. 다음 참조: KOR/19/0032.

<sup>53</sup> KOR/19/0003.

<sup>54</sup> KOR/16/0020.

<sup>55</sup> KOR/17/0014.

<sup>56</sup> KOR/19/0044.

“거의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중국에 오랜 살던 47살 여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것을 봤다... [여성은] 굶주리고 어려움을 겪어서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보였다.”<sup>57</sup>

### 4.3 심문 중 구타, 처벌로서의 구타, 좌식 자세 강제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당사국으로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적극적 작위 의무가 있다(제 7조).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10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해야 하는 당사국 의무를 다하는 데 앞서 언급한 조치가 핵심이라고 언급했다.<sup>58</sup> 만델라 규칙도 “수감자 전원은 고문,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재차 국제 인권 규범을 확인한다.<sup>59</sup>

42. 과거 구금됐던 이들은 보위원과 보안원이 고문 및 학대를 가한 여러 사례를 보고했다. 구금자의 행적과 관련된 정보를 캐내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완전히 떠나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는 자백을 받아내려고 심문하는 동안 구타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sup>60</sup> 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도록 강제됐고 움직이면 구타를 당하거나 식량을 박탈 당하는 식의 처벌을 받았다.<sup>61</sup> 국가보위성이나 사회안전성에서 운영하는 구류장에서 여성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릎을 꿇거나 양반다리를 한 상태로 아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어야 했고, 식사나 조사 때만 자세를 풀 수 있었다. 국가보위성 구류장에 2016년 구금됐던 여성은 아래와 같이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아침 7시에 식사를 하고 12시까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화장실에 갈 수 있게 15분간 휴식 시간이 있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게 15분간 휴식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또 저녁을 먹은 후 밤 10시까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sup>62</sup>

43. 구금자는 교도관의 감시를 받거나 일부 시설에서는 감시카메라를 통해 감시를 받았다. 움직이거나 교도관을 쳐다보면 처벌을 받았는데, 한 여성은 2016년 국가보위성 구류장에 구금됐을 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감방 안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본 자세로 앉아 있었다. 눈알도 굴리면 안됐다. 움직

<sup>57</sup> KOR/17/0019. 다음 참조: KOR/19/0004, KOR/18/0035, KOR/19/0032, KOR/18/0032.

<sup>58</sup>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제 20호, 문단 2.

<sup>59</sup> 각주 9, 제 1조.

<sup>60</sup> KOR/19/0016, KOR/10/0050, KOR/19/0008, KOR/19/0003, KOR/18/0004, KOR/18/0011, KOR/19/0049, KOR/19/0011, KOR/18/0004, KOR/19/0005, KOR/18/0029, KOR/19/0004, KOR/18/0035, KOR/19/0051, KOR/19/0046, KOR/19/0010, KOR/18/0058, KOR/19/0044, KOR/17/0123, KOR/18/0031, KOR/18/0032, KOR/18/0081, KOR/19/0042, KOR/19/0013, KOR/18/0027, KOR/19/0032, KOR/17/0048.

<sup>61</sup> KOR/18/0053, KOR/19/0002, KOR/19/0016, KOR/19/0010, KOR/19/0008, KOR/19/0003, KOR/18/0079, KOR/19/0011, KOR/19/0004, KOR/19/0001, KOR/18/0029, KOR/19/0046, KOR/18/0031, KOR/18/0032, KOR/18/0077, KOR/18/0081, KOR/19/0042, KOR/19/0013, KOR/18/0027, KOR/17/0007, KOR/17/0001.

<sup>62</sup> KOR/19/0010.

이면 벌을 받았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게 너무 힘들어서 조금 움직였다. 벌로 팔굽혀펴기 100 번을 하라고 했다. 30번을 겨우 했고, 팔굽혀펴기 말고 다른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금속 막대기로 두 번 맞았다.”<sup>63</sup>

만델라 규칙은 수감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징계 조치와 관련해서도 국제 표준을 정립했다.<sup>64</sup> 제 43조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징계 조치는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이 되어서는 안되며, 가령 체벌을 하거나 수감자의 식사나 식수 제공을 줄이거나 집단으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한 여성은 2016년 사회안전성 교화소에 구금됐는데, 자신이 목격했던 징계 조치를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교화소 음식이 맛이 없어서 밭에 나갈 때 \*\*\*\*\*가 고추 세 개를 집어서 주머니에 숨겼다. 감방을 들고 날 때 마다 검사를 했는데, 고추가 나왔다. 이 사실이 보안원에게 보고됐다. 보안원이 여자 배를 세게 찔고, 여자가 일미터 정도 나가 떨어졌다. 그리고는 농사일 할 때 쓰는 나무 막대기를 들더니 여자 다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여자 입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잘못했다고 말했다.”<sup>65</sup>

아래 여성은 또한 수감 시설 내 사소한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집단 체벌을 받고, 개인 처벌도 받았다고 언급했다.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어야 했는데, 감방 밖에 있는 계호원과 눈을 마주치면 안됐다. 규칙을 제대로 다 알고 있지 못해서, 해당 규칙을 알지 못한 채 계호랑 눈을 마주쳤다. 내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감방 안 구금자 모두가 벌을 받았다. 등 뒤로 손각지를 끼고 여러 번 앉았다 일어났다. 벌을 받다가 내가 기절했고, 계호가 다른 구금자들을 시켜 자기 쪽으로 끌고 오도록 해서 또 머리를 발로 찼다. 구타로 정신을 잃었다. 하루 지나서 아침에 일어나보니 귀에 피가 나 있었다. 지금도 두통이 있고, 아마도 구류장에서 구타를 당한 후유증인 것 같다.”<sup>66</sup>

2012년 노동단련대에 구금됐던 한 여성은 집단 체벌 방식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현장에서 100명이 일한다고 가정하자. 나 하나만 할당량을 다하지 못해도 100명 모두가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다들 할당량을 채운다. 못하면 나머지 99명한테 욕을 먹는다. 벌로 다 같이 아침에 마당을 여러 바퀴 뛰도록 벌을 준다. 그래서 모두 할당량을 맞추려고 한다.”<sup>67</sup>

한 여성은 사회안전성 교화소에 2013년 수감됐고, 주어진 일을 끝내지 못한 벌로 식량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sup>63</sup> KOR/19/0008.

<sup>64</sup> 각주 9, 만델라 규칙, 제 36조-49조.

<sup>65</sup> KOR/18/0078.

<sup>66</sup> KOR/19/0051.

<sup>67</sup> KOR/19/0043.

진술했다.

*“할당량을 끝내지 못하면 밥을 덜 주거나 욕을 먹었다. 할당량에 많이 미치지 못하면 맞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sup>68</sup>*

44. 여성 구금자는 구류장 내 심문에서 물리적 폭행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sup>69</sup> 가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 동기, 누가 관련이 됐는지, 그리고 해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밝혀내려는 목적으로도 물리적 폭행이 사용됐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구금됐던 한 여성은 “폭력은 조사 과정의 일부로 당연시됐다”고 설명했다.<sup>70</sup> 국가보위성 시설 내 심문이 특히 가혹하다고 알려진다. 여성들은 심문 시 방 안에 담당자 한명만 자리했다고 말한다. 피해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출국한 이후 자신의 행위를 상세하게 진술해야 했다. 담당자가 진술이 상이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금자는 구타를 당할 수 있다. 국가보위성 구류장에 2016년 구금됐던 한 여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도망가려 했다고 자백하지 않았더니 나무막대기로 허벅지와 몸을 마구 때렸다. 대신 머리는 때리지 않았다. 뺨도 여섯 대 정도 맞았다.”<sup>71</sup>

2015년 수감됐던 여성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예심원이 막대기로 때리고 발로 찼다. 보위부에서 특히 심하게 대했다. 중국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 교회를 갔다는 것이 알려지면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가능하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맞았다. 너무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졌다. 아직도 아프다.”<sup>72</sup>*

45. 과거 구금됐던 이들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가려고 시도했다고 판단되는 여성 수감자나 담당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와 접촉했다고 판단한 경우, 특히 가혹한 대우를 받았고 관리소로 보내질 위험이 있다고 한다.<sup>73</sup> 2013년 구금됐던 한 여성은 “중국 당국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민국에 가려했다고 쓰여진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적혀 있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더 심하게 맞았다”<sup>74</sup>고 진술했다.

#### 4.4 강제 노동

46. 국제 규범은 판결의 일부로 부과하는 “교도 작업”과 “강제 근로”를 구분하며, 후자는 금지된다.<sup>75</sup> 만델라 규칙 제 97조는 교도 작업이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실제에서는 수감자가 노동에 대한 공

<sup>68</sup> KOR/19/0032.

<sup>69</sup> 각주 60.

<sup>70</sup> KOR/17/0057. 해당 피해자는 최초 국가보위성 구금 시 경험을 진술했고, 유죄 확정 이후 교화소 구금 시 경험을 진술했다.

<sup>71</sup> KOR/19/0008.

<sup>72</sup> KOR/17/0014.

<sup>73</sup> KOR/17/0001, KOR/17/0007, KOR/17/0045, KOR/17/0014.

<sup>74</sup> KOR/17/0045.

<sup>75</sup> 국제노동기구 제 29호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1930), 제 2조, 문단 1 및 국제노동기구 제 105호 강제 근로 철폐 협약(1957).

정한 임금을 받고 교정당국이나 사설 도급업자가 수익을 내도록 착취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sup>76</sup> 교도 작업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과 표준을 따르며, 산업 재해나 직업병에 따라 수감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sup>77</sup> 일일 및 주간 최장 근무 시간이 정해져야 하고, 일주일에 휴일을 하루 보장해야 한다.<sup>78</sup> 아울러 교도 작업은 고통, 괴로움 또는 슬픔을 유발하는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된다.<sup>79</sup>

47. 로동단련대뿐 아니라 집결소와 교화소에 구금됐던 여성은 강제로 육체 노동을 해야 했고, 주로 건설 또는 농업 부문에 동원됐는데, 국제 표준에 어긋나는 것이다.<sup>80</sup> 식량 배급의 양과 질 모두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특히 힘든 노동이었다. 구금자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2014년 초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여성은 아래와 같이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해야 했다. 일부 수감자는 [집결소] 밖에서 시체를 묻게 땅을 파는 일에 동원됐다. 우리가 일한 대가는 집결소가 가져갔다. 집결소 내부에도 공사를 했다... 석회석을 망치랑 못으로 부수는 일이었다. 날씨 때문에 발이 썩고 얼었고 너무 힘들었다.”<sup>81</sup>*

2014년 사회안전성 집결소에 구금됐던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당시 경험을 진술했다.

*“목걸이의 금속 고리 부분을 손으로 조립했다. 외화를 벌려고 시키는 일이었다... 하지만 돈은 받지 못했다. 대신 우리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집결소를 짓는 데 썼다. 일이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매일 아침 7시에 할당량을 채웠는지 확인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금자는 맞았다. 나는 맞기 싫어서 잠도 자지 않고 일했다. 자려고 눕지도 않았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제대로 음식도 주지 않고, 일만 시켰다. 맨손으로 일했고 손이 아팠다.”<sup>82</sup>*

48.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휴식이 허용되지 않았다. 과거 구금됐던 이는 2016년 농사를 짓다가 다른 구금자의 죽음을 목격했다.

*“40대 중반 정도되는 여자가... 김매기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여자는 사망했다. 여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집결소 관계자들이 치료를 하는 대신에 찬물을 부었다. 여자를 커다란 물 양동이에 넣었다.”<sup>83</sup>*

<sup>76</sup> 각주 9, 만델라 규칙, 제 97조 및 103조.

<sup>77</sup> 상동 제 101조.

<sup>78</sup> 상동 제 102조.

<sup>79</sup> 상동 제 97조.

<sup>80</sup> KOR/18/0053, KOR/19/0003, KOR/18/0078, KOR/19/0004, KOR/18/0029, KOR/18/0035, KOR/18/0060, KOR/18/0075, KOR/17/0123, KOR/18/0058, KOR/19/0032, KOR/19/0036, KOR/19/0044, KOR/18/0031, KOR/18/0032, KOR/19/0043, KOR/19/0037, KOR/19/0042, KOR/18/0027.

<sup>81</sup> KOR/16/0020.

<sup>82</sup> KOR/19/0004.

<sup>83</sup> KOR/17/0019.

---

---

## 4.5 성폭력

49. 국제 인권 표준은 반드시 여성 교도관이 여성 수감자를 감독하도록 한다.<sup>84</sup> 여성 수감자에게 배당된 감옥 내 시설은 여성 관계자 권한 하에 두어야 하며, 남성 관계자는 여성 관계자를 동반할 때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 중에서도 특히 강간, 성희롱 및 성착취를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다만 남성 관계자라 하더라도 특히 의사와 교사의 경우는 여성에게 배당된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에서 직업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sup>85</sup>
50.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여성 모두는 구류장과 집결소에서 여성 구금자를 담당한 이들이 거의 모두 남성 관계자였다고 진술했다. 심문은 남성 조사관이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교도관도 남성이다. 교도관은 감방 접근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여성 구금자를 관찰할 수 있다.<sup>86</sup> 남성 관계자가 관여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은 초기 신체 수색 밖에 없으며, 대체적으로 국가보위성 소속 여성 관계자가 신체 수색을 수행한다.
51. 본 장은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교화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폭력 사례를 언급한 진술을 반영하여 작성됐다.

### 4.5.1 강제 전신 탈의와 강도 높은 신체 수색

52. 국제 표준은 신체 수색이 법에 근거하며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따르며, 신체 수색의 대상인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한다.<sup>87</sup> 강제 전신 탈의는 성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되며,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준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7조에서 금지한다. 만델라 규칙과 방콕 규칙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별도 공간에서 체강 수색을 하도록 명시하며, 대상 수감자와 같은 성별인 의료 종사자 또는 최소한 관련 교육을 받은 담당자가 체강 수색을 하도록 명시한다.<sup>88</sup> 방콕 규칙은 “신체 수색동안 여성 수감자를 존중하고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유의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알몸 수색이나 강도 높은 신체 수색을 대체할 수 있는 스캔 등의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강도 높은 신체 수색이 초래할 수 있는 유해한 정신적 및 잠재적 신체적 영향을 피하”도록 한다.<sup>89</sup> 신체 수색, 특히 알몸 및 체강 수색을 차별적으로 비례성에 어긋나게, 혹은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성폭력 및 학대의 한 형태에 준할 수 있으며, 금지된 목적이거나 차별에 근거를 둔 이유로 수행하거나 심각한 통증 또는 고통을 초래한다면 고

---

<sup>84</sup> 각주 9, 만델라 규칙, 제 81조.

<sup>85</sup> 상동.

<sup>86</sup> KOR/17/0043, KOR/17/0019, KOR/17/0047.

<sup>87</sup> 각주 9, 만델라 규칙, 제 50조–52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31/57) (2016년 1월 5일) 문단 23 및 36 참조.

<sup>88</sup> 각주 9, 만델라 규칙, 제 50조–52조, 방콕 규칙 제 19조–21조.

<sup>89</sup> 각주 9, 제 19조 및 20조.

문에 준할 수 있다.<sup>90</sup> 특정 상황에서 강도 높은 신체 수색은 강간에 준할 수도 있다.<sup>91</sup>

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원력을 사용하여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낼 수 없도록 금지하지만 명시적으로 고문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sup>92</sup> 용의자 심문 시 기록수 또는 필요에 따라 두 명의 립회인이 배석하도록 한다.<sup>93</sup>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용의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수색은 정보 압수의 목적으로만 가능하도록 명시한다.<sup>94</sup> 또한 여성을 수색할 때 여성 립회자 두 명이 배석하도록 하나, 반드시 여성 관계자가 여성을 대상으로 수색을 하도록 명시하지 않는다.<sup>95</sup> 형법은 강간을 범죄로 규정하며, “폭행, 협박하여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녀성을 강간한 자”를 구속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하지만 강간의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다.<sup>96</sup> 더하여 해당 조항은 상당히 편협하며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는데, 남성만이 가해자이며 여성은 반드시 피해자인 것으로 언급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되려 영구화한다.
54.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강제 송환된 여성은 모두 송환 직후 국가보위성 시설에서 신체 수색을 받았다고 진술했다.<sup>97</sup> 일부는 사회안전성 구류장 또는 집결소로 이송된 후에도 신체 수색을 재차 받았다.<sup>98</sup> 신체 수색은 구금자가 혹시 현금이나 기타 값어치 있는 물품을 소지했을 경우 이를 압수하거나, 일부 경우 국외에서 출산을 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sup>99</sup> 일부 과거 구금되었던 이들은 의료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개인이 혈액을 채취하고, 육안으로 매독이나 기타 질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했다고 진술했다. 출산 경험은 곧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체류했다는 지표가 되기에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알려진다. 한 구금자는 출산을 했다는 것이 곧 “국가를 등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2013년 들었던 경험을 진술했다.<sup>100</sup>
55. 과거 구금됐던 여성들이 진술하는 바에 따르면, 신체 수색은 적용 가능한 국제 인권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되며 대상자에게 굴욕감과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이다. 가령 신체 수색 때 피해자들은 옷을 모두 벗도록 지시받았다.<sup>101</sup> 강제 알몸 노출 시 대부분 다른 구금자도 함께 자리했다. 일부는 알몸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여러 번 하도록 지시받았는데, 체강 내에 숨긴 것이 없는 지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sup>102</sup>

<sup>90</sup>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31/57)(2016년 1월 5일) 문단 23.

<sup>91</sup> 각주 3, 조사위원회, 문단 420 및 국제형사재판소 범죄구성요건, 제 7(1)(g)-1조.

<sup>92</sup> 형사소송법, 2016년 개정, 제 166조.

<sup>93</sup> 상동 제 171조.

<sup>94</sup> 상동 제 215조.

<sup>95</sup> 상동 220조.

<sup>96</sup> 각주 11, 형법, 제 279조.

<sup>97</sup> KOR/19/0014, KOR/18/0050, KOR/18/0053, KOR/19/0002, KOR/18/0079, KOR/19/0004, KOR/19/0001, KOR/19/0051, KOR/18/0058, KOR/19/0030, KOR/18/0027, KOR/18/0035, KOR/18/0032 등.

<sup>98</sup> KOR/19/0051, KOR/18/0031, KOR/19/0030 등.

<sup>99</sup> KOR/17/0019, KOR/17/0064, KOR/17/0062, KOR/17/0067.

<sup>100</sup> KOR/17/0064.

<sup>101</sup> KOR/19/0014, KOR/18/0050, KOR/18/0053, KOR/19/0002, KOR/19/0016, KOR/19/0008, KOR/18/0009, KOR/18/0079, KOR/19/0004, KOR/19/0001, KOR/18/0035, KOR/18/0075, KOR/19/0051, KOR/19/0010, KOR/18/0031, KOR/18/0032, KOR/18/0077, KOR/18/0027.

<sup>102</sup> KOR/19/0014, KOR/18/0050, KOR/19/0008, KOR/18/0079, KOR/19/0004, KOR/18/0075, KOR/19/0051, KOR/18/0031, KOR/19/0030, KOR/18/0077.

56. 일부 시설에서 국가보위성 관계자가 질 속을 포함하여 강도 높은 체강 수색을 실시했다.<sup>103</sup> 여성 관계자를 데려와 체강 수색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이들 여성 관계자 일부는 행정 업무 담당자였다. 대체적으로 여성 관계자가 여성 구금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체강 수색을 실시했으나,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이야기를 나눈 두 명은 남성 관계자가 체강 수색을 실시했다고 진술했고, 체강 수색 시에 남성 관계자가 배석한 사례도 있었다.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구금자 대상 신체 수색 시 장갑을 끼던 것으로 파악되나 장갑을 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2011년 국가보위성에서 신체 수색을 받았던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경험을 묘사했다.

*“보위부 구금시설에 도착하자마자 단체로 신체 수색을 받았다.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후 옷을 확인했다. 질과 항문 등 체강도 모두 확인했다. 여자가 신체 수색을 했다. 비닐 장갑을 꼈다. 보위부 산하에서 일했으니까 군관이었을 것이다.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여자가 혈액 검사도 했다. 간염 같은 질병이 있는지 확인했다. 신체 수색 동안 남성은 자리하지 않았다.”<sup>104</sup>*

57. 일부 여성은 관계자가 매독이나 다른 질병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등의 의료적 사유를 들어,<sup>105</sup> 구금자 대상 신체 수색 시 강제 탈의를 정당화했다고 언급했다. 한 여성은 국가보위성 관계자가 자신을 포함해 구금자 24명을 병원에 데려가 남성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게 했다고 진술했다. 2015년 초 경험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하의를 모두 벗으라고 하더니 의사가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숙이라고 했다. 이후 질 속을 검사했다... 의사가 에이즈 검사 절차라고 했다...”<sup>106</sup>*

#### 4.5.2 강간

58. 강간은 완전히 자유롭게 이뤄진 진실된 동의 없이 정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몸 일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항문 또는 생식구에 물건이나 가해자의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행위로 구성된다.<sup>107</sup> 삽입이 폭력을 사용하여, 혹은 폭력의 위협을 통해 이뤄진다면 동의의 부재는 자명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의 위협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자유롭게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가령 피해자가 구금되어 있는 상황 등과 같이 강압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108</sup>

59. 강간은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명시한 권리를 침해한다. 남성과

<sup>103</sup> KOR/19/0014, KOR/18/0053, KOR/19/0002, KOR/19/0008, KOR/19/0001, KOR/19/0004, KOR/18/0032, KOR/18/0027.

<sup>104</sup> KOR/18/0032.

<sup>105</sup> KOR/17/0045, KOR/17/0019, KOR/17/0049.

<sup>106</sup> KOR/17/0049.

<sup>107</sup> 국제형사재판소, 범죄구성요건, 제 7(1)(g)-1조. 다음 참조: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일심재판부 판결(Prosecutor v Kunarac, ICTY-96-23-T)(2001년 2월 22일) 문단 460, 미주인권재판소 판결(Miguel Castro-Castro Prison v Peru, Series C, No. 160)(2006년 11월 25일) 문단 310, 여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철폐를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2014), 제 36조.

<sup>108</sup> 피해자가 가해자의 통제 하에 있거나 동의할만한 능력을 갖춘 상태가 아닐 수 있다. 특히 아동이나 지적 장애가 있는 이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술에 취했거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 등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동의의 부재로 볼 수 있다.

여성 모두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여성이 강간이라는 형태의 폭력에 더 빈번하게 노출된다.

60.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일부 여성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여성 구금자가 구금 시 교도관에게 강간을 당했거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했다.<sup>109</sup> 과거 구금됐던 이는 2010년 구금된지 얼마 되지 않아 관계자가 밤에 자신을 방에 데려가 강간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을 방어하려 했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내가 거부하면 망신을 줄 수 있는 위치라고 위협했다. 나한테 시키는대로 하면 빨리 풀려나게 도와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sup>110</sup>*

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강간을 범죄로 규정하며, 구금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된 관계자는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sup>111</sup> 하지만 과거 구금됐던 이들 진술에 따르면 기밀이 유지되고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받으면서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해당 사항은 국제 표준이 요구하는 바이다.<sup>112</sup> 대신 면담했던 여성 일부는 강간을 당했거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거나 신고하려 시도했다가 더 심한 처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한 여성은 2015년 구류장에 구금됐을 때 상황을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구류장에 보안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밑수꾼이 있었다. 그 여자가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다른 구금자들에게 털어놓았다. 그 중 하나가 심문을 받을 때 보안원에게 사실을 이야기 했다. 그 결과 구금자 모두가 밥을 먹지 못하는 벌을 받았다. 애초에 다른 구금자에게 성희롱 당한 경험을 말한 피해자인 수감자는 더 심한 처벌을 받았다.”<sup>113</sup>*

또 다른 여성은 2013년 구금됐을 때 아래와 같은 경험을 했다.

*“... 보위원들이 구금자를 성적으로 학대했지만 누구도 말할 수 없었다. 맞을까봐 두려워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보위원이 어느날 밤 20대 여성을 불러내는 것을 봤다. 나머지 구금자들에게는 자라고 했다. 보위원은 술에 취했었다. 데려간 여성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하더니 성폭행했다. 구금자가 해당 건을 예심원에게 말했는데, 나중에 신고한 구금자는 처벌을 받고 구타를 당했다.”<sup>114</sup>*

62.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다른 여성들은 노동단련대 내 성폭력을 보고했는데, 음식을 더 받거나 또는 신체적으로 덜 힘든 일을 하는 대가로 성착취를 당하기도 했다.<sup>115</sup> 한 여성은 노동단련대에 2013년 구금됐었고 아래

<sup>109</sup> KOR/19/0004, KOR/18/0058, KOR/19/0036, KOR/19/0044, KOR/18/0032, KOR/18/0031, KOR/17/0045, KOR/17/0019, KOR/17/0048, KOR/17/0062. 통일연구원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 등 기타 기관도 비슷한 양상을 기록했다.

<sup>110</sup> KOR/17/0003.

<sup>111</sup> KOR/16/0001, KOR/16/0008(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과거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각주 11, 형사법, 제 279조.

<sup>112</sup> 방콕 규칙 제 25조는 “학대를 보고한 여성 수감자는 즉시 보호 조치, 지원 및 상담을 제공 받아야 하며, 역량있고 독립적인 당국에서 제기된 문제를 조사해야 하고, 전적으로 기밀 유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호 조치는 특히 보복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각주 9.

<sup>113</sup> KOR/17/0062.

<sup>114</sup> KOR/17/0045.

<sup>115</sup> KOR/17/0019, KOR/17/0048, KOR/18/0031.

와 같은 사례를 공유했다.

“성적 학대가 있더라도 피해자는 입을 다문다. 나보다 한 살 어린 구금자가 있었는데, 지도원이랑 성관계를 가졌다. 그 구금자는 우리랑 같은 방에서 자지 않고 지도원들이 자는 식당에서 잤다. 식당일을 배정받았던 다른 구금자들도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해당 여성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았는데, 가령 우리 모두가 일할 때 쓸 수 있었다.”<sup>116</sup>

#### 4.5.3 강제 낙태 및 영아 살해

63. 강제 낙태는 성폭력의 한 형태로 고문과 학대 금지를 위반할뿐 아니라, 생명권, 안전 및 (여성의 신체 자결권 및 통합권을 포함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이러한 내용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을 포함한 국제 인권 조약에 언급되어 있다. 또한 강제 낙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비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과 여성차별철폐조약에서 보장하는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포함한 보건에 대한 권리와 본질적으로 모순되는 행위이다. 강제 낙태는 또한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가족을 이룰 권리와 국가로부터 가족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산전 및 산후, 또한 출산 과정에서 임신부가 특별히 보호 받아야 할 권리도 침해한다.<sup>117</sup>
64. 국내적으로는 여성권리보장법(2010)에 의거하여 임신부를 보호하도록 하는데, 출산 전 3개월과 출산 후 7개월 사이 형사 처벌을 유예한다.<sup>118</sup> 과거 구금됐던 이들은 임신한 구금자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보장하는 특별 보호 조치를 제공받지 못하며, 미결구금 단계에서 강제로 낙태를 해야 할 위협에 놓인다고 진술했다.<sup>119</sup> 사회안전성 집결소에 2015년 구금됐던 한 여성은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나는 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임신한 여자가 있었다. 계호원은 아이가 중국 혼혈인 것을 알았다. 국내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이 혼혈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안전부 집결소 의사가 낙태를 하라고 말했다. 결국은 강제로 낙태를 당하고 교화소에 갔다...”<sup>120</sup>

65. 과거 구금됐던 이들에 따르면, 일부 경우 교도관이 구타나 고된 노동을 통해 낙태를 유발하려고 한 경우도 있다고 알려진다. 과거 구금됐던 한 여성은 자신과 함께 송환된 무리와 함께 2010년 국가보위성 시설에 구금됐을 때

<sup>116</sup> KOR/19/0036.

<sup>117</sup>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참조, E/CN.4/1999/68/Add.4, 문단 45 및 49, 제 4차 세계여성회의(1995)에서 채택된 베이징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문단 115,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논평 제 19호(A/47/38), 문단 22, CEDAW/C/CHN/CO/6, 문단 32 참조.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 16(e)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e)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책임감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참조.

<sup>118</sup> 여성권리보장법(2010), 문단 38.

<sup>119</sup> KOR/19/0001, KOR/18/0035, KOR/17/0043, KOR/17/0045.

<sup>120</sup> KOR/19/0001.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공유했다. “임산부가 두 명 있었다. 한 명은 3개월, 다른 한 명은 5개월이었다. 둘을 발로 심하게 차서 아이를 유산한 후 시설을 나가게 하려고 했다. 임신 상태라고 말하면 대우를 더 잘 받을까봐 임신 사실을 밝혔는데, 되려 똑같이 맞았다.”<sup>121</sup>

66.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사회안전성 집결소에서 영아 살해 건이 있었다는 정보도 제공받았다. 낙태를 하기에는 임신 주수가 상당히 경과했던 사례들로 파악된다.<sup>122</sup> 한 여성은 사회안전성 도 집결소에서 2012년 임신 7개월인 구금자가 같은 감방에 있었는데, 낙태를 시키려고 병원에 데려 갔으나 임신 주수가 상당히 경과하여 낙태가 어려워 다시 돌아왔다고 보고했다. 이후 의료적 처치없이 감방 내에서 아이를 낳았다.

“계호원이 등에 벽돌을 올리고 걸어 다니라고 했다. 일주일 정도를 매일 등에 벽돌을 올리고 걸어 다녔다. 결국 출산을 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었다. 나한테 아이를 싸서 밖에 두라고 했다. 여자는 다음날 바로 일을 했다.”<sup>123</sup>

해당 목격자는 이후 신생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지만,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는 겨울이었기에 신생아가 방치되어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67. 한 여성은 2011년 송환 후 사회안전성 집결소에 구금됐는데, 강제로 조기에 출산했다고 알려진다. 태어났을 때 신생아는 살아 있었으나, 교도관에게 살해당했다. 산모는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해서 일주일 후 사망했다고 알려진다.

“여자가 구금되자마자 유산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유산을 하도록 엉덩이로 넘어지라고 했다. 서너 번 정도 엉덩이로 넘어졌는데 유산이 되지 않았다. 집결소 밖으로 데리고 가서 유산을 하도록 주사를 맞았다. 여자가 출산을 하는 것을 내가 봤다...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신생아를 얼굴이 바닥을 향하도록 뒀다. 계호원이 봉지에 싸서 감방 밖으로 데려갔다... [산모는]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했다. 일주일 정도 있다가 여자는 죽었다.”<sup>124</sup>

68. 유산시키려는 의도로 구금 상태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타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학대를 가하는 것은 고문과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에 준한다. 신생아 살해와 출산 후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여성은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 당한 경우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6조 위반이다. 이러한 여성의 사망은 또한 보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여성 구금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폭력으로 낙태를 유발한 것은 강제 낙태에 해당하며, 성폭력의 한 형태로 여성의 안전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sup>125</sup> 성 및 재생산 보건권을 침해한다.

<sup>121</sup> KOR/17/0043.

<sup>122</sup> KOR/17/0019, KOR/17/0067. 조사위원회 보고서, 각주 3, 문단 424-434 참조.

<sup>123</sup> KOR/17/0019.

<sup>124</sup> KOR/17/0067.

<sup>125</sup> 안전에 대한 권리는 신체 및 정신적 통합권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권리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제 35호 문단 3과 9 참조.

## 4.6 보건의료 접근성

69.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이 보장하며, 이 때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을 포함한다.<sup>126</sup> 만델라 규칙은 국가가 수감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sup>127</sup> “모든 교도소에는 수감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보호, 개선하는 것을 업무로 삼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재확인한다.<sup>128</sup> 아울러 수감자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무상으로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sup>129</sup> 방콕 규칙은 “젠더에 따른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여성 수감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sup>130</sup>
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국가가 “진반적무상치료제도”를 발전<sup>131</sup> 시키도록 명시하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sup>132</sup> 하지만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국 내 감옥에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sup>133</sup> 대신 가족 면회 여부에 따라 치료도 결정된다. 2016년 사회안전성 교화소에 구금됐던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밖에서 면회 올 친척이 아무도 없어서 약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 여자는 사망했다.”<sup>134</sup>*

71.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수감자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 여성은 사회안전성 구류장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없었다. 담당자가 병원에 와서 나한테 돈을 안 낸다고 소리를 질렀다.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도 소리질렀다... 구류장에서 의료적 검사를 받지 않았다. 우리집에서 누가 와서 돈을 내지 않으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아무도 안와서 치료를 못 받았다. 그냥 누워만 있었다. 의사가 와서 처방을 해줬다. 하지만 처방된 약을 살 돈이 없었다.”<sup>135</sup>*

72. 한 여성이 2014년 로동단련대에 구금됐던 경험에 따르면 수감자가 심각하게 아플 경우 집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상황상 가능한 가장 인도적인 선택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구금시설 내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가족이 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sup>126</sup>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2조.

<sup>127</sup> 각주 9, 제 24조.

<sup>128</sup> 각주 9, 제 25조.

<sup>129</sup> 각주 9, 제 24(1)조.

<sup>130</sup> 각주 9, 제 10조.

<sup>131</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제정 및 2019년 개정), [이하“헌법”], 제 56조.

<sup>132</sup> 상동 제 72조.

<sup>133</sup> KOR/18/0050, KOR/19/0010, KOR/18/0078, KOR/19/0011, KOR/19/0036, KOR/19/0044, KOR/91/0043, KOR/18/0081, KOR/19/0042, KOR/19/0032, KOR/19/0015, KOR/19/0005, KOR/18/0027.

<sup>134</sup> KOR/18/0078.

<sup>135</sup> KOR/19/0011.

“로동단련대에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 번 수감자가 너무 아파서 집에 보낸 적이 있다.”<sup>136</sup>

#### 4.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을 포함한 국제 인권 표준에 명시되어 있다.<sup>137</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법제도 상에도 공정한 재판의 기준이 되는 요소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헌법은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한다.<sup>138</sup> 헌법은 또한 영장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다.<sup>139</sup>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형사 사건의 취급 처리 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sup>140</sup> 자의적 구금도 금지하는데,<sup>141</sup> 체포 담당자가 반드시 체포 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며<sup>142</sup> 구금자가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sup>143</sup> 개인을 미결구금할 수 있는 조건도 한정적으로 명시한다.<sup>144</sup> 형사소송법은 체포당사자의 가족이나 소속단체가 체포 후 48시간 내에 체포 사실을 통지 받도록 하며,<sup>145</sup> 법집행담당자는 조사시 우선적으로 용의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통지해야 한다.<sup>146</sup> 용의자는 기소될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sup>147</sup>

74. 하지만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상기 언급한 공정한 재판 표준은 거의 준수되지 않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14(1)조에 따른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더욱이 강제 송환된 개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법에 따라 재판없이 단기 노동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sup>148</sup> 2014년 로동단련형 2개월을 선고받았던 한 여성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 경우 판사나 변호사가 없었다. 안전부에서 관리자가 회의를 하더니 형기를 결정한 후 나에게 알려줬다.”<sup>149</sup>

또 다른 여성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안전부에서 로동단련대 소장에게 넘어가고 나서 우리에게 형기를 알려줬

<sup>136</sup> KOR/18/0029.

<sup>137</sup>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4조.

<sup>138</sup> 각주 131, 헌법, 제 164조.

<sup>139</sup> 상동 제 79조.

<sup>140</sup> 각주 92, 형사소송법, 제 6조.

<sup>141</sup> 상동 제176조.

<sup>142</sup> 상동 제179조.

<sup>143</sup> 상동 제258조 및 169조.

<sup>144</sup> 상동 제178조.

<sup>145</sup> 상동 제182조. 법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당 소속단체는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등과 같은 국가 단체를 가리킨다.

<sup>146</sup> 상동, 제 168조.

<sup>147</sup> 상동, 제 158조.

<sup>148</sup> KOR/19/0003, KOR/18/0029, KOR/18/0035, KOR/18/0075, KOR/19/0036, KOR/19/0010, KOR/19/0030, KOR/19/0043, KOR/19/00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2016년 12월 22일 개정.

<sup>149</sup> KOR/16/0020.

다. 예심이나 재판은 없었다. 재판은 교화형을 받은 사람만 받는다. 노동단련형을 받은 경우 재판이 없다.”<sup>150</sup>

75.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여러 기관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무보수로동처벌을 최대 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sup>151</sup>
76. 형법은 불법 월경을 범죄화하고,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거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한다.<sup>152</sup> 형법은 어떤 경우 정상이 무거운지 명시하지 않으나,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가려고 했거나, 중국에 “길다”고 판단될만한 기간 체류했거나, 다른 이가 국경을 넘도록 도운 경우에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구금지는 조국반역죄로도 기소될 수 있는데, 조국반역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거나 최대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sup>153</sup>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6조는 사형제를 아직 폐지하지 않은 당사국이 사형을 가장 심각한 범죄에만 적용하며, 또한 가장 예외적인 경우에 가장 엄격한 제한을 두고 적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안전장치를 제시한다.<sup>154</sup>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 채 결과적으로 사형을 부과한 경우, 해당 선고가 자의적으로 내려진 것이며, 따라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고 명시한다.<sup>155</sup> 더하여, “정상이 무거운” 건이라면 해당 개인은 관리소로 보내질 위험이 있으며, 강제실종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관리소가 사법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비밀리에 운영되는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77. 조사 시 변호사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적법절차와 관련된 권리는 보장되지 않으며,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은 피상적이며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sup>156</sup> 과거 구금됐던 이는 재판 시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변호사가 배석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변호사도 재판에 배석만 할뿐 그 외에는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재판을 받는 이는 변호사와 상의하지 못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하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국가보위성 구류장에 2017년 구금됐던 이는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배정됐지만, 변호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다. 내가 변호사한테 뇌물을 줘야 변호사가 나를 변호할 것이라는 인상을 처음에 받았다. 어떤 경우에도 북에서는 변호사가 고객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당의 이해를 대변한다.”<sup>157</sup>*

<sup>150</sup> KOR/19/0003.

<sup>151</sup> 행정처벌법(2016 개정) 제 17조, 332조, 333조 및 335조-337조, 더하여 해당 법 제 332조는 “행정처벌은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 검찰기관, 재판기관, 인민보안기관, 중재 기관, 검열감독기관, 자격수여기관이 준다”고 명시한다.

<sup>152</sup> 각주 11, 형법, 제 221조.

<sup>153</sup> 상동 제 63조.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을 면담하지 못했다. 하지만 복수의 면담 대상자는 관리소에 구금됐던 이들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sup>154</sup>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36호, 문단 5 참조.

<sup>155</sup> 상동 문단 41.

<sup>156</sup> KOR/18/0050, KOR/19/0002, KOR/19/0049, KOR/19/0011, KOR/19/0004, KOR/18/0074, KOR/19/0001, KOR/18/0060, KOR/18/0078, KOR/18/0058, KOR/17/0123, KOR/19/0044, KOR/18/0032, KOR/18/0031, KOR/18/0077, KOR/19/0042, KOR/19/0015, KOR/19/0030, KOR/18/0027.

<sup>157</sup> KOR/18/0074.

78.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이들은 마을 광장이나 학교 앞 등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은 경험도 있었다.
79. 선고형량은 용의자의 해외 체류 기간, 가족 배경뿐 아니라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연줄이 있는지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sup>158</sup> 관련하여 2011년 사회안전성 집결소에 구금됐던 한 여성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고향 안전부 담당자가 와서 데려갈 때, 가족 중 누군가가 담당자 여행비를 지불해야 한다. 돈을 안내면, 집결소에서 그만큼 더 오래 있어야 한다.”<sup>159</sup>

관계자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사법절차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보이며, 관련하여 2012년 구금됐던 여성이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재판은 \*\*\*\*\*에 있는 \*\*\*\*\*재판소에서 열렸다. 재판 전에 변호사와 한 번 이야기했다. 마치고 조사를 받는 것 같았다. 변호사가 나한테 중국에 왜 갔고,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거기서 왜 체포가 되었고, 왜 북으로 돌아왔는지 물었다... 재판은 한 시간정도 걸렸다. 5년 형을 받았다. 하지만 삼촌이 뇌물을 줬다. 예심원인지 판사인지에게 줬고, 5년 형이 3년 형으로 줄었다.”<sup>160</sup>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14(5)조에 명시됐듯,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요 요소는 항소할 권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항소할 권리를 언급한다.<sup>161</sup> 하지만 면담대상자 대다수는 항소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고, 언급한 이들조차도 항소를 시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sup>162</sup> 목격자 한 명은 항소를 요구했다가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sup>163</sup>

<sup>158</sup> KOR/18/0050, KOR/18/0053, KOR/19/0008, KOR/19/0003, KOR/18/0004, KOR/19/0049, KOR/19/0004, KOR/19/0001, KOR/18/0035, KOR/19/0046, KOR/18/0058, KOR/19/0032, KOR/19/0036, KOR/19/0044, KOR/18/0032, KOR/18/0031, KOR/19/0043, KOR/18/0081, KOR/19/0037, KOR/19/0042, KOR/17/0001, KOR/17/0017, KOR/17/0018, KOR/17/0020, KOR/17/0014, KOR/17/0067.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권리의 대가(代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34-39쪽 참조.

<sup>159</sup> KOR/19/0042.

<sup>160</sup> KOR/18/0032.

<sup>161</sup> 각주 92, 형사소송법, 제 356조 및 359조.

<sup>162</sup> KOR/19/0024.

<sup>163</sup> KOR/17/0045.

---

## 5. 결론

80. 공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잡히거나 출국 후 강제로 송환된 여성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당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100명 이상의 여성 진술이 이러한 양상을 확인하며, 조사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기관도 같은 양상을 기록했다.<sup>164</sup>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진술 일부는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건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이 여전할 가능성이 있다.
81.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여성은 체포된 후, 허락없이 자국을 떠났다는 이유로 제도적으로 처벌을 받고, 비인도적인 환경에 구금되며, 고문 및 학대에 노출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적절한 식량 접근성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 혜택을 받은 이들은 아무도 없다. 일부는 강간, 강제 전신 탈의, 강도 높은 신체 수색 및 강제 낙태 등 여러 형태의 성폭력의 피해자이다. 또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어머니로부터 빼앗아 살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82. 여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체포 및 구금될 때 젠더에 따른 인권 침해를 경험한다. 전신 탈의 상태의 수색과 강도 높은 신체 수색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젠더에 따른 신체 혹은 언어 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을 당할 위험이 높고, 무상으로 생리대를 제공받는 등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에 개인 위생상 필요한 시설 접근과 물품 제공이 보장되지 않고, 강제 낙태 등 성 및 재생산 보건과 권리를 침해받으며,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와 유방암 및 부인과암 검사와 같은 예방 조치를 포함한 젠더에 따른 보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식량권이 보장되지 않아 생리 주기가 영향을 받거나, 임신부 및 수유부와 아이는 영양실조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
83.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국제공동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여성 및 구금자 권리 등과 관련하여 국내법 및 정책을 소폭 개정하여 상황을 개선하고자 조치를 취한 점을 인지한다. 가령 정부는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채택했다. 또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2016년 정기보고서를 제출한 후 2017년 해당 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국내법은 구금시설 내 구금된 이들 모두에게 유의미한 안전 장치를 언급하며, 정부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의 일환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 절차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도록 한 권고를 수용한 점은 긍정적이다.
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시설을 포함하여 해당국 내 독립적인 인권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는데, 이는 구금자가 처한 환경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데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구금자가 처한 환경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해당국 정부가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아울러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국제 인권 메커니즘이 제공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결국 국가로서 최소한의 인권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

<sup>164</sup> 각주 3, 조사위원회, 문단 380-492 및 문단 1098-1114 참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인권백서 2016, 데이비드 호크,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의 감춰진 수용소 IV. 젠더 억압 및 수감자 실종"(2015),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7".

## 6. 권고

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만델라 규칙 및 방콕 규칙에 개괄된 구금자 보호 조치를 이행한다.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포함하여 구금과 관련된 유엔 인권 조약기구에서 제시한 권고를 이행한다.
-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선택의정서,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를 비준한다.
- 유엔 인권 제도 전문가와의 기술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국 내 구금제도를 국제 표준에 맞춘다. 여성 구금자만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특히 미결구금을 포함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 모범사례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국가가 구금된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국제 인도주의 기관이 구금시설 내 필요를 평가하고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국제 인권 감시 관계자가 해당국 내 구금시설 전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법 및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을 권고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모두에게 출입국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오거나 송환된 이들 모두가 자신의 인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며, 번칙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유 등으로 징역형이나 다른 형태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즉각 정책을 이행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가 징역형이나 다른 형태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들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 제도와 의료적, 정신적 및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국내 법제도를 검토하여 여성이 구금된 시설과 관련된 방콕 규칙을 전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 국내 법제도를 검토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의 처우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국제 규범 및 표준을 전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체포 또는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심사를 보장하고, 지체없이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법에 의거하여 상위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및 선고를 심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또한 고문을 통해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 형법의 강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국제 표준에 맞춰 강간을 정의한다.
- 성폭력 건을 포함하여 구금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혐의 전수를 즉각 공정하게 조사하며, 구금자가 인권 침해 건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는 창구를 제공하고, 자신이 겪은 인권 침해를 신고한 이들이 보복을 당한 혐의 전수를 즉각 공정하게 조사하며, 피해자 모두가 유의미한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교정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을 권고한다.

- 국경 지역을 포함하여 구금시설 내 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국내법 및 국제 인권 규범 및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감방 내 환경을 개선하여 인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표준을 준수하고, 구금자가 고문 및 학대를 받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식량, 위생 및 보건의를 제공하고, 구금자가 강제 노동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며, 구금자를 성폭력을 포함하여 젠더에 따른 폭력으

로부터 보호하도록 한다.

- 여성 수감자 건강을 위해 최소 바닥 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시설을 제공한다. 적합한 실외 오락 시간을 보장한다.
- 국제 규범 및 표준에 맞춰 여성 구금자는 반드시 여성 관계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성폭력 및 기타 형태의 폭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제도적 안전 장치를 이행한다.
-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비례성에 따르지 않으며 법에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적법한 목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강제 전신 탈의와 강도 높은 신체 수색 관행을 즉각 철폐한다. 스캔 및 전자 탐지 방법 등 대체 검사 방법을 마련한다.
- 여성 구금자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 적합한 수준의 영양가를 갖춘 식사를 제공하며, 건강한 식사를 제대로 조리하여 제공하며, 수감자 누구나 필요로 할 때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며, 임신부와 수유부만의 별도 필요를 고려한다.
- 구금시설 내 여성 모두가 성 및 재생산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적이며 적절한 보건의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무상으로 생리대를 제공하고,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화장실과 세면 시설을 제공하는 등 여성으로서 필요한 위생 요구 조건을 보장한다.
- 임산부를 구금하지 않도록 하며, 국내법과 국제 모범사례에 따라 임산부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며, 임산부가 출산 전후를 포함해 필요로 하는 성 및 재생산 관련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강제낙태와 유산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관행을 금지하는 별도 법 조항을 마련하고, 이런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공정하게 조사하며, 관련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한다.
- 구금시설 내 영아살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고, 구금 시 자행된 영아살해 혐의 건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며,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이를 적용가능한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재판에 세워 책임을 묻는다.
- 산모가 구금 상태에서 출산한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으로 등록하여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법집행담당관 모두에게 인권 침해 유형에 따라 젠더별로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국내 및 국제 인권 표준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다.
- 전국 구금시설별 구금자 수를 성별 등으로 구분한 최신 통계를 제공한다. 거주시설 표준, 식량 및 식수 접근성, 보건의료 서비스 품질, 옥내 위생설비, 불만 사항을 제기할 권리 등을 중심으로 구금자가 처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도록 허용한다.

86. 유엔 회원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실제 혹은 추정되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보복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개인을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재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법 및 정책적 제도를 마련하며,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기초적인 서비스 중에서도 보건의료 및 교육 접근을 허용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협력하여 구금시설 내 인도적 필요를 평가하고 구금자에게 관련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국제 인권 감시 관계자가 구금시설 전수를 포함하여 해당국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촉구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국제 범죄, 특히 조사위원회가 파악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어 왔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을 공정한 재판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국내 혹은 국제 재판에 세우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별첨]

**별첨 1: 법적 제도**

**별첨 2: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집한  
목격자 진술**

---

---

## 별첨 1: 법적 제도

### 국제법 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유엔 헌장에 명시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약속해왔고, 세계인권선언이 국제 관습법을 대변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선언에 법적으로 구속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 제도 또는 이념과 무관하게 전 인류와 전 국가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 기준"을 제공한다.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에 더욱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상 다섯 개 조약의 당사국이다. 이들 조약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호한다. 또한 성별, 종교, 인종, 장애 여부 및 기타 사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여성, 아동, 장애인을 포함하여 차별을 겪거나 겪을 위험이 있는 특정 집단을 보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상기 언급한 국제 인권 조약을 비준하면서, 국제법에 의거한 관련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당사국이 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공통핵심문서(Core Common Document)에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된 권리는 헌법과 기타 관련 법과 규정에서 확실하게 보호한다”고 언급하며 “당사국으로 참여한 국제 인권 조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기술했다.<sup>165</sup> 각급 당국은 상기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된 권리를 자국 영토 내 개인 모두를 위해 예외없이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자국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sup>166</sup>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취한 조치는 사실상 국민 대다수의 여행을 금지한다.<sup>167</sup>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구금된 이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권리를 일부 명시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개인의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학대와 고문을 금지하며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도 보장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적절한 식량, 물 및 위생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과 거주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강제로 송환된 이들이 노출되는 구금 및 조사 환경은 상기 두 국제 규약에 명시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구금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할지에 대한 국제 표준과 지침이 존재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권위있는 지침을 제시한다.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만델라 규칙)<sup>168</sup>과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 범죄자

---

<sup>165</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고서에 포함되는 공통핵심문서”, HRI/CORE/PRK/2016, 문단 53-34.

<sup>166</sup> 세계인권선언 제 13,2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2조.

<sup>167</sup> 각주 3, 조사위원회 보고서, 문단 403.

<sup>168</sup> 각주 9.

사회 내 처우에 관한 규칙(방콕 규칙)<sup>169</sup>은 모든 구금 시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환경을 제시한다. 방콕 규칙은 여성 구금자 대우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하며, 여성 구금자의 성별에 따른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할 정책과 관행을 제시한다.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 차별에 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 다루는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6년 6월 16일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에 가입했으나, 해당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2000)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해당 의정서는 국내적으로 인신매매를 기소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며, 국가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분을 보호하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의료적·정신적 지원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sup>170</sup> 해당 의정서는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경유국 및 목적국이 피해자에게 망명 절차와 국제적 보호 조치를 제공하도록 한다.<sup>171</sup> 국가는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을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sup>172</sup>

국가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고문받을 위험이 있거나 인종이나 종교 때문에, 국적이나 특정 사회 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또는 정치적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sup>173</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2009년, 2014년, 2019년 총 세 차례 참여했다. 해당국 정부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일부 권고를 수용했고, 수용한 권고를 이행할 경우 해당국 내 구금된 개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이행, 인도주의 기구에 제한없는 접근과 완전하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모니터링 조건 보장,<sup>174</sup>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대화 및 협력 참여, 여성 대상 차별 철폐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 이행, 인신매매 퇴치 노력 강화, 사법부 독립성 확대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선, 전국 민에게 식량,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권고 등이 있다.

<sup>169</sup> 각주 9.

<sup>170</sup>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2000) [이하 "인신매매 의정서"] 제 6조.

<sup>171</sup> "일반논평 제 32호: 젠더와 관련된 난민 지위, 망명, 국적 및 무국적자 여성", CEDAW/C/GC/32, 2014년 11월 14일, 문단 15 참조.

<sup>172</sup> 각주 170, 인신매매 의정서, 제 9조.

<sup>173</sup> 고문방지협약 제 3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제 33조. 두 협약 모두 국제 관습법으로 여겨진다.

<sup>174</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아동의 제한으로 인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는 구금 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

---

## 국내법 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sup>175</sup> 헌법은 또한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sup>176</sup> 거주와 여행의 자유,<sup>177</sup>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사회적 지위<sup>178</sup>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도 일부 포함한다. 사법부 독립성을 헌법에서 보장하며, 재판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토록 한다.<sup>179</sup> 헌법은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sup>180</sup> 헌법은 영장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sup>181</sup>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사법심사나 인신보호영장 관련 조항도 찾아볼 수 없다.

형법은 불법 월경을 범죄화하고,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하거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한다.<sup>182</sup> 형법은 어떤 경우 정상이 무거운지 명시하지 않으나,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가려고 했거나, 중국에 길다고 판단될만한 기간 체류했거나, 다른 이가 국경을 넘도록 도운 경우에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구금자는 조국반역죄로도 기소될 수 있는데, 조국반역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하거나 최대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sup>183</sup>

형법은 법집행담당자가 불법으로 용의자를 구금, 구인 혹은 체포할 경우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을 적용하거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키거나 재범인 경우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을 적용하도록 한다.<sup>184</sup> 형법은 또한 “비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에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하도록 한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또는 날조하여 처벌을 받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sup>185</sup>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은 형법상 범죄로 명시하나, 강간의 정의는 명시하지 않았다.<sup>186</sup>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형사 사건의 취급 처리 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며, 형사소송법 조항 다수는 실행에 옮

---

<sup>175</sup> 각주 131, 헌법, 제 64조.

<sup>176</sup> 상동 제 67조.

<sup>177</sup> 상동 제 75조.

<sup>178</sup> 상동 제 77조.

<sup>179</sup> 상동 제 166조 및 각주 92, 형사소송법, 제 271조.

<sup>180</sup> 각주 131, 헌법, 제 164조.

<sup>181</sup> 상동 제 79조.

<sup>182</sup> 각주 11, 형법, 제 221조.

<sup>183</sup> 상동 제 63조.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해당하는 죄로 유죄 확정을 받은 이를 면담하지 못했다. 하지만 복수의 면담대상자는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이를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sup>184</sup> 상동 제 241조.

<sup>185</sup> 상동 제 242조.

<sup>186</sup> 상동 제 279조. “폭행, 협박하여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여성을 강간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 번 른간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길 경우 구금자의 인권을 상당 부분 보호할 수 있다.<sup>187</sup>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며,<sup>188</sup> 체포 담당자가 반드시 체포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며,<sup>189</sup> 구금자가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sup>190</sup> 개인을 미결구금할 수 있는 조건도 한정적으로 명시한다.<sup>191</sup> 형사소송법 상 체포 당사자의 가족이나 소속단체는 체포 후 48시간 내에 체포 사실을 통지받아야 하며,<sup>192</sup> 법집행담당자는 조사시 우선적으로 용의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통지해야 한다.<sup>193</sup> 피고인은 기소될 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sup>194</sup> 예심과 수사 시 변호사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더불어 구금 초기 사법심사에 대한 조항이 없다.

여성권리보장법(2010)은 여성을 위한 안전 장치를 보장하며, 특히 여성 인권과 관련하여 자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이 동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한다.<sup>195</sup> 여성권리보장법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의무적으로”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명시한다.<sup>196</sup> 법집행기관과 사법기관이 “녀성의 인격을 존중하며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sup>197</sup> 여성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폭력 또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신체에 피해를 가하거나 영장없이 신체를 수색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sup>198</sup>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sup>199</sup> 여성권리보장법 채택은 긍정적인 조치이나 집행 관련 조항은 모호하다. 여성권리보장법은 각급 국가 기관이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한다고 명시한다.<sup>200</sup> 하지만 독립적인 감시 제도는 보장하지 않으며, 여성권리보장법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 조치가 있을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sup>187</sup> 각주 92, 형사소송법, 제 6조.

<sup>188</sup> 상동 제 176조.

<sup>189</sup> 상동 제 179조.

<sup>190</sup> 상동 제 169조 및 제 258조.

<sup>191</sup> 상동 제 178조.

<sup>192</sup> 상동 제 182조.

<sup>193</sup> 상동 제 168조.

<sup>194</sup> 상동 제 158조.

<sup>195</sup> 여성권리보장법(2010) 제 10조.

<sup>196</sup> 상동 제 5조.

<sup>197</sup> 상동 제 16조.

<sup>198</sup> 상동 제 37조.

<sup>199</sup> 상동 제 38조.

<sup>200</sup> 상동 제 54조. 시군인민위원회는 지방 기관으로 해당 시군 정부 업무의 행정적 집행 기관이다. 공적 업무 및 문화 활동을 수행하며 초급 당조직 업무를 관리한다.

---

## 별첨 2: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집한 목격자 진술

다음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거 구금됐던 이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수집한 진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구금 시설 내 환경과 구금자 대우와 관련된 진술뿐 아니라, 적법절차 접근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진술도 포함한다. 인용구 말미 괄호 안에 표기한 날짜와 장소는 진술에 언급된 일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를 의미한다. 2009년을 시작으로 그 이후 발생했던 사례만을 포함했는데, 이는 현재 상황을 가능한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경우, 과거 구금 경험이 있는 남성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기는 하나, 2015년 이후 남성으로부터 수집한 진술도 아래 포함했다. 남성일 경우 인용구 시작부 괄호 안에 이를 표기했다.

### 1. 과밀집 및 비위생적 환경

“감방 안에 공동 화장실이 있고 냄새가 났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냄새가 더 심했다. 감방은 지금 이 방[5m×4m]보다 삼분의 일 정도 더 컸고, 50명 정도 있었다. 침구는 없었고 감방 밖에서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sup>1</sup> (2017년 안전부 구류장)

“감방마다 여섯 내지 일곱 명이 있었다. 감방 크기가 매우 작았지만, 추울 때는 오히려 붐비는게 도움이 됐다. 담요는 찢지만 낚고 더러웠고 덮고 있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바닥은 시멘트였고, 바닥보다 조금 올라온 나무 판자에 앉아 있었다.”<sup>2</sup> (2017년 보위부 집결소)

“감방 크기는 지금 이 방[약 6m×4m]의 네 배 정도 되었고, 30명에서 50명 정도 수감됐다. 너무 복잡했다.”<sup>3</sup> (2017년 안전부 교화소)

[남성] “감방 안 위생 상태는 매우 나빴다. 씻을 수 없었고, 벌레가 가득했다.”<sup>4</sup> (2017년 안전부 구류장)

“교화소 내 전염병이 많이 돌았다. 더럽고 벌레가 많았기 때문이다.”<sup>5</sup> (2016년 안전부 교화소)

“지금 이 방보다 감방은 더 작았고, 최대 10명 정도 수감됐다.”<sup>6</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구류장에 감방이 7개 있었고, 감방마다 수감자는 23명, 24명 정도였다. 감방 1,6,7번은 여성이 수감됐다.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똑바로 누울 수도 없어서 모로 누워야 했다.”<sup>7</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

<sup>1</sup> KOR/18/0050

<sup>2</sup> KOR/19/0016

<sup>3</sup> KOR/19/0051

<sup>4</sup> KOR/19/0050

<sup>5</sup> KOR/18/0078

<sup>6</sup> KOR/18/0079

<sup>7</sup> KOR/19/0011

“감방 안에 수감자가 30명 정도 있었다. 감방 크기는 이 방[3m×2m]의 두 배 정도 됐다... 수감자는 벽을 따라 앉아야 했다. 그리고 앉은 자리에 그대로 누워서 잤다. 자려고 다 누우면 감방이 좁았다.”<sup>8</sup> (2015년 안전부 교화소)

“작은 감방에 10명 수감자와 함께 구금됐다. 방 크기는 가로 2미터, 세로 5미터 정도 됐다.”<sup>9</sup> (2014년 보위부 구류장)

“벼룩이 너무 많았다.”<sup>10</sup> (2014년 안전부 집결소)

“보위부 구류장에서 가로 4미터, 세로 5미터 방에 40명과 함께 구금됐었다. 난방은 안됐고, 밤에 다 누워서 잘 수도 없는 공간이었다. 담요가 없어서 추웠다.”<sup>11</sup> (2014년 보위부 구류장)

“담요가 없었고 불일은 양동이에 봤다.”<sup>12</sup> (2014년 안전부 구류장)

“감방은 가로 3미터, 세로 4미터 정도였고 10명 내지 20명 정도 수감자가 있었다. 총 다섯 개 감방이 있었는데, 남성 수감자 감방 옆에는 여성 수감자 감방이 번갈아가며 위치했다. 담요를 받긴 했는데, 그걸 바닥에 깔고 덮기까지 해야 했다.”<sup>13</sup> (2013년 보위부 시설)

“가로 6미터, 세로 6미터 정도 되는 감방에서 잤고, 20명 정도 같이 있었다.”<sup>14</sup> (2013년 안전부 집결소)

“방에 25명 내지 30명이 있었다. 남녀가 섞여 있었다. 이 방[약 6m×4m] 두 배 정도 됐다. 잘 때, 담요 말고 주는 것은 없었다.”<sup>15</sup> (2013년 노동단련대)

“구류장 안에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변도 잘 못봤다. 배설물 때문에 화장실이 자주 막혔다. 우리들이 옷으로 화장실을 막히게 만든다고 억울하게 몰렸다. 맨손으로 화장실을 치우라고 했다. 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손을 깨끗히 씻을 수도 없었다. 가족이 음식을 가져오면 배가 너무 고파서 더러운 손으로도 먹었다. 인간적이지 않았다.”<sup>16</sup> (2013년 안전부 구류장)

“수감자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동물 대하듯 했다.”<sup>17</sup> (2012년 안전부 교화소)

“안전부 집결소는 너무 더럽고 벌레가 가득했다.”<sup>18</sup> (2012년 안전부 집결소)

“보위부에서 작은 감방에 갇혀 있었다. 감방에 여섯 명 내지 아홉 명 정도 구금됐었다. 감방은 가로 5미터, 세로 2미

<sup>8</sup> KOR/19/0004

<sup>9</sup> KOR/18/0029

<sup>10</sup> KOR/18/0029

<sup>11</sup> KOR/18/0075

<sup>12</sup> KOR/18/0075

<sup>13</sup> KOR/18/0058

<sup>14</sup> KOR/18/0058

<sup>15</sup> KOR/19/0036

<sup>16</sup> KOR/19/0044

<sup>17</sup> KOR/18/0032

<sup>18</sup> KOR/18/0077

---

터 정도 됐다. 밤에 잘 때 아홉 명 정도 누울 수 있었고 머리와 다리 방향을 교차해서 누웠다.”<sup>19</sup> (2011년 보위부 집결소)

“감방은 이 방[약 5m x 3m]보다 조금 작았고, 12명이 수감됐었다.”<sup>20</sup> (2011년 보위부 집결소)

“너무 비좁아서, 잘 때 머리와 다리 방향을 교차해서 누웠다.”<sup>21</sup> (2011년 보위부 집결소)

“우리가 있었던 방 상태가 좋지 않았다. 냄새가 났다. 여덟 명 내지 아홉 명 정도 있었다. 밤에 잘 때 담요는 썼지만 침대는 없었다. 바닥에 누워 잤다. 베개를 썼지만 깨끗하지 않았다.”<sup>22</sup> (2011년 노동단련대)

## II. 기본적인 청결을 위한 충분하고 깨끗한 물 미제공

[남성] “씻지 못했다. 세수는 했다. 감방마다 일곱 명 정도 있었는데, 하루에 씻고 화장실 물 내리는 데 총 30리터 물을 쓸 수 있게 했다. 수돗물이 없었다.”<sup>23</sup> (2017년 안전부 구류장)

“감옥 내 물이 깨끗하지 않아 병이 많이 돌았다.”<sup>24</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화장실 옆에 수도꼭지가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썼다. 각자 그릇이 있었다. 2시간에 한 번씩 5분 동안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그 때만 물을 마시거나 물을 쓸 수 있었다... 변기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씻었고 옆에 있는 수도꼭지를 사용했다. 계호가 우릴 보지 못하도록 몸을 웅크려야 했다. 일요일만 씻을 수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씻고 빨래도 하고 벌레도 잡았다. 일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마쳐야 했다. 각자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목욕을 하고 빨래를 했다. 빨래를 널어 말릴 곳은 없어서, 털어서 말렸는데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해야 했다.”<sup>25</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수돗물은 없었다. 뚜껑이 없는 큰 양동이를 줘서, 거기에 용변을 봤다. 그래서 청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세수도 못했다.”<sup>26</sup> (2014년 안전부 집결소)

“샤워기는 없었다. 강에 가서 씻었는데, 허락을 받아야 가서 씻을 수 있었다.”<sup>27</sup> (2013년 노동단련대)

“거기에 있는 동안 샤워는 못했지만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을 수는 있었다.”<sup>28</sup> (2012년 안전부 집결소)

---

<sup>19</sup> KOR/18/0032

<sup>20</sup> KOR/18/0077

<sup>21</sup> KOR/18/0077

<sup>22</sup> KOR/19/0037

<sup>23</sup> KOR/19/0050

<sup>24</sup> KOR/18/0009

<sup>25</sup> KOR/19/0011

<sup>26</sup> KOR/18/0029

<sup>27</sup> KOR/19/0036

<sup>28</sup> KOR/18/0031

“감방에 수도물은 없었고, 감방 밖에 보위원이 씻는 샤워실이 있었다. 감방 한 쪽에 양동이가 있었다. 보위원 샤워실에서 물을 길어 양동이에 담아 감방으로 가져왔다.”<sup>29</sup> (2011년 보위부 집결소)

“매일 수감자 한 명을 지정해서 강에 가서 물을 양동이로 여러 번 퍼올 수 있었다. 그 물로 세수를 했다. 강에서 길어온 물이 깨끗하지는 않았다.”<sup>30</sup> (2011년 로동단련대)

“매일 저녁 물 50리터를 줘서 아침에 감방 안에서 씻을 수 있었다. 비누는 주지 않았고, 우리 12명이 동시에 씻어야 했다.”<sup>31</sup> (2011년 보위부 집결소)

### Ⅲ. 독립된 공간이 보장되지 않은 화장실

[남성] “감방 안에 화장실이 있었고 허리 높이 정도 벽이 있었다. 감방 한쪽 면은 철창이었다.”<sup>32</sup> (2017년 안전부 구류장)

“감방 뒤편에 화장실이 있었다. 막힌 공간은 아니었고 계호가 볼 수 없게 일부 막아주는 낮은 벽이 있었다.”<sup>33</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변기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씻었고 옆에 있는 수도꼭지를 사용했다. 계호가 우릴 보지 못하도록 몸을 웅크려야 했다.”<sup>34</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감방 밖에 화장실이 있었지만, 아침 6시 기상했을 때만 쓸 수 있었다. 아니면 감방 안에 있는 양동이에 해결해야 했다.”<sup>35</sup> (2015년 보위부 집결소)

“용변을 보고 싶을 때 계호원 허락을 받아야 했고, 계호원은 허락하고 나서 뒤돌아 있다가 내가 용변을 다 보면 다시 돌아서 감시했다.”<sup>36</sup> (2015년 보위부 집결소)

“밤에 화장실로 쓰라고 양동이를 줬다.”<sup>37</sup> (2012년 안전부 집결소)

“감방 한 쪽 바닥에 구멍이 나 있었고, 거기에 용변을 봤다. 감방 안에서 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림막이 없어서 다른 수감자가 가림막을 들고 서 있었고 그 뒤에서 씻었다.”<sup>38</sup> (2011년 보위부 집결소)

<sup>29</sup> KOR/18/0032

<sup>30</sup> KOR/19/0037

<sup>31</sup> KOR/18/0077

<sup>32</sup> KOR/19/0050

<sup>33</sup> KOR/19/0011

<sup>34</sup> KOR/19/0011

<sup>35</sup> KOR/19/0001

<sup>36</sup> KOR/19/0001

<sup>37</sup> KOR/18/0031

<sup>38</sup> KOR/18/0032

---

---

“감방 안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허리 높이까지만 가림막이 있었다.”<sup>39</sup> (2011년 보위부 집결소)

#### IV. 허락을 구한 후 화장실 사용

“아침 6시가 기상 시간이었고, 하루 중에 용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이 때만 화장지를 받았다. 낮 동안 소변을 보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다. 긴장 상태에 있어서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허락해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sup>40</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세 시간 동안 정해진 자세로 앉아 있어야 했고, 세 시간마다 계호가 교대했다. 계호에게 말을 걸거나 용변을 보겠다고 요청할 수 없었다. 아침 6시에 기상했는데, 그 때만 화장실을 쓸 수 있었다.”<sup>41</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아침 5시 반에 기상했다. 그 때만 화장실에 갈 수 있었다. 이후에는 화장실에 갈 수 없었다.”<sup>42</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용변을 보고 싶을 때 계호원 허락을 받아야 했고, 계호원은 허락하고 나서 뒤돌아 있다가 내가 용변을 다 보면 다시 돌아서 감시했다.”<sup>43</sup> (2015년 보위부 집결소)

“바깥에 있는 화장실 한 개를 공동으로 사용했는데, 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다. 폐쇄된 공간이라 사생활이 보호됐다.”<sup>44</sup> (2013년 노동단련대)

#### V. 위생용품 미제공

“생리 기간 중 여성에게 생리대를 주지 않아서, 임시 방편으로 옷을 생리대로 만들었다.”<sup>45</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담요나 세면도구는 집에서 가져와야 했다.”<sup>46</sup> (2017년 안전부 구류장)

“생리 때 생리대를 주지 않아서 같이 있던 수감자 한 명이 다른 수감자에게는 무명을 빌리고 나한테는 양말을 빌려서 임시로 생리대를 만들었다. 비누로 빨았다.”<sup>47</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북에서 생리대를 생산한다. 질도 좋다. 하지만 비싸서 인구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정도만 사서 쓸 수 있다.

---

<sup>39</sup> KOR/18/0077

<sup>40</sup> KOR/18/0050

<sup>41</sup> KOR/19/0002

<sup>42</sup> KOR/19/0003

<sup>43</sup> KOR/19/0001

<sup>44</sup> KOR/19/0036

<sup>45</sup> KOR/18/0050

<sup>46</sup> KOR/18/0050

<sup>47</sup> KOR/19/0010

나머지는 천 생리대를 썼다.”<sup>48</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생리대는 주지 않았다.”<sup>49</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비누, 치약, 칫솔, 담요 등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 수감자가 각자 해결해야 했다.”<sup>50</sup> (2015년 안전부 교화소)

“생리대는 주지 않았다. 여성 수감자는 가지고 있는 천이 무엇이든지 그걸 써서 생리 때 알아서 해결했다.”<sup>51</sup> (2014년 로동단련대)

“씻으려면 치약이나 비누 같은 세면도구를 모두 집에서 가져가야 했다.”<sup>52</sup> (2011년 로동단련대)

## Ⅶ. 충분하지 않은 양과 적절치 않은 품질의 음식

“매끼 강냉이 50알 정도를 줬는데, 상한 강냉이였다.”<sup>53</sup> (2017년 안전부 구류장)

“강냉이 밥과 절인 말린 무 조각을 줬다. 매끼 똑같았다. 하루 세 끼를 줬지만 매번 아주 적은 양을 줬다.”<sup>54</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밥으로 강냉이를 줬는데, 제대로 도정하거나 익힌 강냉이가 아니었다. 양동이에 밥을 담아 왔는데, 양동이는 한 번도 세척하지 않았고 끔찍한 냄새가 났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sup>55</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구류장보다 교화소 밥이 나았다. 계량 용기에 입쌀을 줬다. 용기 높이가 7센티미터 정도 됐고, 절인 배춧국을 줬다. 점심과 저녁 때 싱싱한 야채도 줬기 때문에 [교화소가] 더 나았다. 물도 수돗물을 아무 때나 마실 수 있었다.”<sup>56</sup> (2016년 안전부 교화소)

“강냉이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갈아서 쇠술에 삶았다. 술에 삶으면 퍼낼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한 손갈을 퍼서 줬는데, 200그램이 좀 넘는 양을 소금국과 같이 줬다... 수감자 모두가 한 번 퍼준 양만큼 받았다.”<sup>57</sup> (2015년 안전부 교화소)

“강냉이 밥을 충분히 주지 않았지만, 대신 가족이 밥을 가져왔다.”<sup>58</sup> (2015년 안전부 교화소)

<sup>48</sup> KOR/18/0009

<sup>49</sup> KOR/19/0011

<sup>50</sup> KOR/19/0004

<sup>51</sup> KOR/18/0035

<sup>52</sup> KOR/19/0037

<sup>53</sup> KOR/18/0050

<sup>54</sup> KOR/18/0053

<sup>55</sup> KOR/19/0002

<sup>56</sup> KOR/19/0011

<sup>57</sup> KOR/19/0004

<sup>58</sup> KOR/18/0074

---

“집결소에서 매끼 강냉이와 소금국을 줬다.”<sup>59</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강냉이를 조금 줬다. 그릇에 딱 채우지도 않았다.”<sup>60</sup> (2014년 보위부 구류장)

“강냉이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삶아서 식사로 줬다. 강냉이 상태가 아주 나빴다. 배추는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는데, 국으로 만들어 식사 때 줬다. 나는 대부분 먹지 않았다. 이물질이 있었기 때문이다.”<sup>61</sup> (2014년 안전부 집결소)

“한 그릇에 담긴 강냉이를 수감자가 다같이 먹었다. 손으로 먹었다. 강냉이는 충분한 양이 아니라서 빨리 먹는 사람이 많이 먹을 수 밖에 없었다.”<sup>62</sup> (2014년 보위부 구류장)

“매끼 썩은 감자 다섯 알을 줬다. 알 크기가 작았다. 동물이나 먹을만한 수준이었다. 가족이 아침에 수감자가 먹을 밥을 가져올 수 있었다.”<sup>63</sup> (2014년 안전부 구류장)

“‘돼지죽’이라고 불렀다. 돼지새끼나 먹을 법한 음식이었다. 굉장히 묽은 죽으로, 100명을 먹일 양으로 강냉이 가루 3.4킬로그램만 조리했다.”<sup>64</sup> (2014년 안전부 교화소)

“삶은 강냉이와 배춧국을 줬다. 하지만 음식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전혀 먹을 수가 없었다. 동물이나 먹을 음식이었다.”<sup>65</sup> (2014년 보위부 집결소)

“대기실 안에 화장실이 있었다. 캄캄하고 좁고 음식도 빈약했다. 강냉이 알만 조금 줬다.”<sup>66</sup> (2013년 안전부)

“강냉이를 껍질과 함께 얇게 편으로 잘라서 소금국이랑 줬다. 하루에 세 번 줬고, 10분 동안 먹어야 했다.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 수감자는 그리고 나서 일을 했다.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출용 의류를 만들었다.”<sup>67</sup> (2013년 안전부 교화소)

“충분한 양의 음식을 주지 않았다. 두부 콩을 강냉이에 섞어 줬다. 두세 국자를 퍼서 줬다. 입쌀은 주지 않았다. 4월 15일 김일성 탄생일처럼 국경일 때만 일 년에 한 두번 입쌀을 줬다.”<sup>68</sup> (2013년 안전부 교화소)

“하루 세 번 식사를 줬는데, 강냉이를 줬다. 한 끼당 30알 정도 줬다... 수감자 가족이 방문할 때 먹을만한 음식을 가져올 수 있었다.”<sup>69</sup> (2013년 로동단련대)

---

<sup>59</sup> KOR/19/0004

<sup>60</sup> KOR/18/0029

<sup>61</sup> KOR/19/0004

<sup>62</sup> KOR/18/0075

<sup>63</sup> KOR/18/0075

<sup>64</sup> KOR/19/0027

<sup>65</sup> KOR/19/0046

<sup>66</sup> KOR/19/0010

<sup>67</sup> KOR/17/0123

<sup>68</sup> KOR/19/0032

<sup>69</sup> KOR/19/0036

“하루 세 번 200알 내지 300알 정도 강냉이를 먹었다.”<sup>70</sup> (2012년 보위부 구류장)

“매일 세 끼 삶은 강냉이를 줬다. 강냉이 알을 세봤는데, 한 끼에 50알 정도 됐다.”<sup>71</sup> (2011년 보위부 집결소)

“감자 조금이랑 소금국을 줬다.”<sup>72</sup> (2011년 로동단련대)

“충분한 양의 음식을 주지 않았다. 국이랑 강냉이밥을 줬다. 강냉이밥은 제대로 도정하지 않아서 먹기가 힘들었다... 16일 후 \*\*\*\*\*에서 보안원이 나를 데리러 왔다. 거주지 구금 시설로 이관됐다. \*\*\*\*\* 시 안전부 구류장으로 이관됐다. 상황이... 더욱 안 좋았다. 보위부 시설과 마찬가지로 강냉이밥을 먹었는데, 안전부에서 강냉이를 전혀 도정하지 않고, 삶기만 했다. 차이가 있다면 안전부에서는 가족이 방문할 수 있어서 밥을 가져다줬다. 가족이 뇌물을 주지 않아도 밥을 가져올 수 있었다.”<sup>73</sup> (2010년 안전부 구류장)

“음식을 굉장히 적은 양 줬다. 매끼 삶은 옥수수를 한 줌 줬다.”<sup>74</sup> (2010년 보위부 구류장)

## Ⅶ. 영양실조

[남성] “식사는 강냉이와 메주콩을 찌서 줬다. 매끼 강냉이 200알 정도 줬다. 충분하지 않았다. 구금자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올 때 음식을 가져왔다. 가족이 면회를 안오면 구금자는 영양실조에 걸린다. 2018년 이 구류장에서 남성 구금자 두 명이 굶어 죽었다. 나오고 나서 들었다. 한 명은 30대로 이름이 \*\*\*\*\*였다... 자식이 네 명이라서 살기가 어려워서 가족이 면회를 올 수 없었고 그래서 죽었다. 다른 한 명은 50대로 이름이 \*\*\*\*\*였다... 마찬가지로 면회를 안 와서 영양실조로 죽었다.”<sup>75</sup> (2017년 안전부 구류장)

“일주일에 두 번씩 면회가 가능했다. 면회 오는 사람이 음식을 가져오면 먹을 수 있었다. 로동단련대에 있을 때 하루에 세 끼를 줬다. 매끼 감자를 줬다. 면회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구금자는 제대로 먹지를 못했는데, 심지어 나무를 베는 등 육체 노동에 동원되면 더 힘들었다.”<sup>76</sup> (2016년 로동단련대)

“구금됐을 때 강냉이를 조금 밖에 받지 못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점점 더 힘들어졌는데, 생리가 멈췄다. 영양실조에 걸리고 고생해서 여자는 모두 생리를 안했다.”<sup>77</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강냉이와 콩 반 그릇이랑 시래기 소금국을 줬다. 하루 세 번 똑같은 음식을 줬다. 당시 살이 많이 빠졌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았다.”<sup>78</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sup>70</sup> KOR/18/0031

<sup>71</sup> KOR/18/0032

<sup>72</sup> KOR/19/0037

<sup>73</sup> KOR/19/0013

<sup>74</sup> KOR/18/0027

<sup>75</sup> KOR/19/0050

<sup>76</sup> KOR/19/0003

<sup>77</sup> KOR/18/0009

<sup>78</sup> KOR/19/0011

---

“영양실조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구급됐을 때 세 명이 죽는 것을 봤다. 썩을 태워서 사람이 죽어서 나는 냄새를 없앴다... 내가 있던 감방에서 구급자 서너명이 영양실조로 아팠다. 상태가 아주 심각한 사람들만 모아 놓은 반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안 갔고... 나는... 갔다. 석 달 내지 넉 달 정도 있다가 돌아왔다. 그 반에 가면 일을 덜 한다.”<sup>79</sup>  
(2015년 안전부 교화소)

“42살 먹은 \*\*\*\*\*이 내가 막 교화소에 갔을 때 죽었다. 영양실조로 죽었다... 교화소에 있는 동안 다섯 내지 여섯 명 정도 죽었다. 대부분 영양실조로 죽었다... 매일 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하면, 가족 면회도 없다. 하루 할당량을 할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구급자가 있는데, 그러면 가족이 면회를 오기도 힘들게 된다.”<sup>80</sup> (2015년 안전부 교화소)

“그 곳에 구급됐을 때 가족이 식사를 가져왔다. 보위부가 벌 주고 압박하려고 가족이 가져 온 음식을 주지 않아서 굶은 적이 몇 번 있다. 보위부 구류장 자체에서 밥을 주지는 않았다. 밥을 가져다 줄 가족이 없는 수감자에게는 보위부 계호가 자기들 밥을 좀 줬다.”<sup>81</sup> (2014년 보위부 구류장)

“\*\*\*\*\* 할머니’라고 불리는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가 있었다. 영양실조랑 결핵 때문에 사망했다.”<sup>82</sup> (2014년 집결소)

“영양실조를 겪는 사람이 많았다... 여성 구급자는 영양실조 때문에 생리를 안했다.”<sup>83</sup> (2014년 로동단련대)

“씩 난 작은 감자 열 알 정도랑 소금국을 받았다. 감자를 먹으면 아파서 우리는 감자는 안 먹었다. 가족들이 밥을 가져올 수 없어서 배가 고팠다. 영양도 부족하고 피로해서 사람들이 아팠다.”<sup>84</sup>  
(2014년 로동단련대)

“강냉이 가루로 만든 죽을 줬다. 모자를 더 많이 뜨는 사람은 음식을 더 많이 받았다. 모자를 덜 뜨는 사람은 음식을 적게 받았다. 그러다보니 몸이 약한 사람이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수감자가 영양실조에 걸렸다.”<sup>85</sup> (2014년 안전부 교화소)

“\*\*\*\*\* 군 안전부 구류장에서 영양실조에 걸렸다. 너무 약해져서 걸을 수도 없었다.”<sup>86</sup> (2014년 안전부 구류장)

“영양실조 때문에 30대였던 \*\*\*\*\*이 사망했다. 영양실조 진단을 받고 나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별도 반으로 갔다. 거기서 죽었다.”<sup>87</sup> (2013년 안전부 교화소)

“2012년이랑 2013년에 사망자 수는 20명 정도 되는데, 사망자 모두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다. 낮에는 일했기

---

<sup>79</sup> KOR/19/0004

<sup>80</sup> KOR/19/0044

<sup>81</sup> KOR/18/0029

<sup>82</sup> KOR/18/0035

<sup>83</sup> KOR/18/0035

<sup>84</sup> KOR/18/0075

<sup>85</sup> KOR/19/0027

<sup>86</sup> KOR/19/0051

<sup>87</sup> KOR/19/0032

때문이다. 대부분 영양실조 때문에 사망했다.”<sup>88</sup> (2013년 안전부 교화소)

“영양실조 면에서 여성 수감자가 좀 나왔다. 남성 수감자가 영양실조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특히 남자는 신체적으로 고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면회가 없으면 힘들었다.”<sup>89</sup> (2013년 노동단련대)

“하루 세 번 강냉이 200알 내지 300알 정도를 줬다. 영양실조인 수감자가 많았다. 특히 음식을 가져 올 가족이 없으면 더욱 그랬다.”<sup>90</sup> (2012년 안전부 집결소)

“익힌 강냉이밥 조금이랑 소금국, 김치, 나물을 줬다. 영양실조로 많이 죽었다. 내가 있던 감방에서도 한 명 사망했는데, 그 사람 말고도 많이 죽었다.”<sup>91</sup> (2012년 안전부 교화소)

“식사로 강냉이밥을 100그램 정도 밖에 주지 않았고, 가족이 식사를 가져올 수도 없었다. 그래서 힘이 없었다...”<sup>92</sup> (2012년 노동단련대)

“\*\*\*\*\* 안전부 집결소에 다섯 달 정도 구금되었을 때, 다섯 명이 영양실조로 죽었다... 산에 묻었는데 관 없이 묻었다. 감방 안에서 사망했다.”<sup>93</sup> (2011년 안전부 집결소)

“\*\*\*\*\* 보안원이 와서 나를 데리고 \*\*\*\*\* 구역 보안서로 왔다... 집결소에 있는 동안 이미 영양실조가 되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sup>94</sup> (2011년 안전부 집결소)

“\*\*\*\*\* 교화소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봤다. 영양실조나 다른 병으로 죽었다. 시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치웠다... 산에 커다란 까만 통이 있었다. 사람들 말로는 거기에 시체를 넣고 태운다고 했다... 열흘마다 남녀 합쳐 15명 정도 죽었다. 나도 약간 영양실조이긴 했지만 오빠가 음식을 가져다 줬다. 3년 간 그곳에 있을 때 매년 사람이 많이 죽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그랬다.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결핵 진단을 받으면, 허약반에 갔다. 허약반에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약을 받는 것밖에 없었다. 물론 약도 밖에서 누가 보내줘야 한다. 아니면 약이 없다.”<sup>95</sup> (2008년-2010년 안전부 교화소)

“강냉이 200알 정도랑 국을 받았다. 모두 너무 배가 고팠다. 많은 남자가 영양실조였다. 구류장에 있는 동안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들었다.”<sup>96</sup> (2009년 보위부 구류장)

<sup>88</sup> KOR/19/0032

<sup>89</sup> KOR/19/0036

<sup>90</sup> KOR/18/0031

<sup>91</sup> KOR/18/0032

<sup>92</sup> KOR/19/0043

<sup>93</sup> KOR/18/0032

<sup>94</sup> KOR/19/0042

<sup>95</sup> KOR/19/0034

<sup>96</sup> KOR/19/0015

---

---

### Ⅷ. 좌식 자세 강제

“감방에 있을 때 항상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다. 실수로 움직이면 감방 문에서 창살까지, 감방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벌을 받았다.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나무 판자로 되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무릎이 까졌다.”<sup>97</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감방 안에서 양반 다리를 하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유지하고 앉아야 했다. 계호는 세 시간에 한 번씩 교대했다. 근무 서는 계호에 따라서 잠깐 쉴 수도 있었다. 움직이면 벌을 받는다.”<sup>98</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구류장 수감자는 항상 감시를 받았고 움직이면 안됐다.”<sup>99</sup> (2017년 보위부 집결소)

[남성] “보위부 구류장에 10일 있는 동안 취조 받을 때 빼고 난 감방 안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했다.”<sup>100</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남성] “안전부 구류장에서 일과는 아침 6시 기상해서 세면을 하고 담요를 접고 아침을 먹은 후 12시까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저녁 7시까지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저녁을 먹고 밤 10시까지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지침은 2시간 마다 휴식 시간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계호원이 누군지에 따라 휴식 시간이 있기도, 없기도 하다. 구류장에 있는 동안 바깥 공기를 마신 적은 없다.”<sup>101</sup> (2017년 안전부 구류장)

“아침 7시에 식사를 하고 12시까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화장실에 갈 수 있게 15분간 휴식 시간이 있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게 15분간 휴식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또 저녁을 먹은 후 밤 10시까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sup>102</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감방 안에서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몸을 움직이면 벌을 받았다.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은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았고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한동안 있었다.”<sup>103</sup> (2016년 보위부 집결소)

“세수를 하고 아침 6시 30분부터 같은 자세로 하루종일 앉아 있었다. 근무를 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10분 동안 휴식을 취할 때도 있고, 처벌을 받을 때도 있다... 조사 받을 때 말고는 항상 앉아 있었다.”<sup>104</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구류장에서 계속 앉아 있었다... 움직이면 맞았다. 조금만 움직여도 맞았고, 말도 하면 안됐다.”<sup>105</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하루 종일 감방 안에 있었다. 아침에 10분, 오후에 10분 휴식 시간이 있었다. 양반다리로 앉아서 손은 무릎 위에 올

---

<sup>97</sup> KOR/18/0053

<sup>98</sup> KOR/19/0002

<sup>99</sup> KOR/19/0016

<sup>100</sup> KOR/19/0050

<sup>101</sup> KOR/19/0050

<sup>102</sup> KOR/19/0010

<sup>103</sup> KOR/19/0008

<sup>104</sup> KOR/19/0003

<sup>105</sup> KOR/18/0079

려두었다. 바닥이 딱딱했다.”<sup>106</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각자 그릇이 있었다. 2시간에 한 번씩 5분 동안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그 때만 물을 마시거나 물을 쓸 수 있었다. 나머지 시간에는 양반다리로 앉아서 손은 무릎 위에 올린 자세로 계속 있었다. 일본 식민지 때 조선인들을 가둬두고 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영화에서 본 적이 있다.”<sup>107</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항상 감시받았다... 양반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아 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차라리 일을 달라고 했다. 그렇게 앉아 있는게 힘들고, 차라리 일 하는게 낫다 싶었다. 하지만 계속 앉아 있으라고 했다.”<sup>108</sup> (2015년 보위부 집결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금자 모두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sup>109</sup> (2014년 보위부 구류장)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같은 자세로 감방 안에 앉아 있었다. 운동도 할 수 없었다... 마음대로 움직이면 처벌 받는다. 양반다리를 하고 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 고개는 숙이고 있었다. 움직이다가 걸리면 별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어야 한다. 두 시간에 한 번씩 근무를 교대했는데, 그 때 쉴 수 있었다.”<sup>110</sup> (2014년 보위부 구류장)

“감방 안에서 하루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양반다리를 하고 고개는 바닥을 보고 숙이고 있었다. 움직이면 안됐다. 움직이면 벌을 받았는데, 앞으로 손을 뺀고 한참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다. 남자 수감자는 팔굽혀펴기를 했다. 감방에 여자 20명 내지 30명 정도 있었다. 담당자들은 감시카메라로 감방 안에 있는 우리의 자세를 감시했다.”<sup>111</sup> (2014년 보위부 집결소)

“하루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바닥은 나무 바닥이다...”<sup>112</sup> (2012년 보위부 구류장)

“양반다리를 하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자세로 시선은 바닥을 본 채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고통스러웠다.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휴식 시간이 있었다. 겨울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나면 보위원이 불러내서 감방 안 수감자 모두에게 벌을 줬다. 휴식 시간을 주지 않거나, 어떨 때는 움직인 사람이 한참 동안 서서 벌을 받았다.”<sup>113</sup> (2011년 보위부 집결소)

“양반다리를 하고 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 움직이면 안됐다. 계호가 좋은 사람이면 아침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5분 내지 10분 휴식 시간을 줬다.”<sup>114</sup> (2011년 보위부 집결소)

“보위부 감방 안에서 계속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야 했다. 아침 5시에 기상해서 잠자리에 드는 밤 9시까지 그랬다.

<sup>106</sup> KOR/18/0079

<sup>107</sup> KOR/19/0011

<sup>108</sup> KOR/19/0001

<sup>109</sup> KOR/18/0029

<sup>110</sup> KOR/19/0004

<sup>111</sup> KOR/19/0046

<sup>112</sup> KOR/18/0031

<sup>113</sup> KOR/18/0032

<sup>114</sup> KOR/18/0077

---

---

움직이면 안됐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머리를 40도로 숙이고 있는 자세로 내내 앉아 있었다.”<sup>115</sup> (2011년 보위부 구류장)

“감방 안에서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다. 창살을 등지고 앉아서 계호가 언제 보는지 알 수 없었다. 감시카메라가 있었다. 반대편에 1미터 정도 높이의 문이 있었다.”<sup>116</sup> (2010년 보위부 구류장)

“같은 자세로 또 앉아 있어야 했다. 세 시간에 한 번씩 15분 몸을 펼 수 있는 휴식 시간을 줬다. 안전부 구류장에 두 달간 구금됐었다.”<sup>117</sup> (2010년 안전부 구류장)

## IX. 조사 중 구타 및 협박

“조사를 받는 동안 나에게 대한민국으로 왜 가려고 했는지 물었다. 대한민국으로 갈 의도가 없었다고 부정하자 때리기 시작했다. 한 명이 날 때렸다. 허벅지를 여러 번 차고 뺨을 때렸다. 맞을 때 문은 닫혀 있었다. 다음날 구류장에서 시키는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너무 아팠다. 허벅지가 온통 멍들었다. 씹을 수도 없었다.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같이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맞았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너무 아팠다. 생각만해도 눈물이 난다. [면담대상자가 눈물을 흘렸다.] 다른 수감자들도 맞았다. 매일 사람들이 맞았다.”<sup>118</sup> (2017년 보위부 집결소)

[남성] “보위부 구류장에서 열흘 간 조사 받았는데, 매번 한 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됐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보위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낱자와 증거를 들고 와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구타를 당했다. 조사 때 주먹으로 때리거나 대걸레 손잡이나 허리벨트 등 아무거나 손에 잡히면 그걸로 때렸다. 얼굴, 몸 여기저기를 때렸다... 한 명이 항상 나를 구타했다... 다른 보위원도 구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를 때린 보위원과 같은 소속인 보위원 열 명 정도가 알고 있었다. 정보과 소속이다. 구타로 멍이 많이 들었다. 이후 오랜 기간 후유증을 겪었다.”<sup>119</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구타가 있었다. 조사를 받고 온 사람 중에 멍이 든 사람들이 있었다. 다들 울었다. 나도 맞았다. 도구를 써서 때리지는 않았다. 먼저 수갑을 차고, 사실을 말하고 있었는데도 거짓말을 한다고 맞았다. 나한테 욕을 하고 벌을 줬다. 양쪽 손을 들고 수갑을 찬 채로 서 있는 벌을 받았다. 아니면 벌로 허리를 숙여서 손으로 발목을 잡은 채로 있었다. 움직이면 맞았다. 매일 조사를 받았다. 나보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젖은 수건으로 뺨을 때렸다... 나를 조사한 보위원 이름은 \*\*\*\*\*이다.”<sup>120</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보위부에서 내가 한 행동이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몰랐다. 내가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했다는데, 난 아니라고 부정했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을 나무판 위에 올려두면 손가락을 막대기로 때렸다. 그리고 보위부 구류장으로 보내졌다. 거기서 더 두꺼운 막대기로 더 심하게 때렸다. 17일 동안 갇혀 있었고, 조사 받으러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 아직도 그 때 맞았던 것의 후유증이 있다. 소리를 지른다고 맞고 눈을 마주쳤다고

---

<sup>115</sup> KOR/19/0042

<sup>116</sup> KOR/19/0013

<sup>117</sup> KOR/19/0013

<sup>118</sup> KOR/19/0016

<sup>119</sup> KOR/19/0050

<sup>120</sup> KOR/19/0003

맞고, 별다른 이유없이 맞았다. 기절하기도 했다...”<sup>121</sup> (2016년 보위부)

“25일 동안 구금됐다. 세 번 조사 받았다. 조사 받을 때마다 머리채를 잡았다. 나무막대기로 끊임없이 맞았다.”<sup>122</sup>  
(2016년 보위부 집결소)

[남성] “\*\*\*\*\* 혐의로 체포됐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보위부에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 보위부에 갔고, 지금 까지 저지른 범죄를 모두 자백하라고 했다. 거부했더니 구타하기 시작했다.”<sup>123</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남성] “처음 한 달 동안 조사할 때마다 매일 맞았다. 조사 받는 시간 내내 서 있었고, 맞을 때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 사람들이 때리고 싶지 않을 때만 구타가 없었다. 조사 받을 때 나한테 질문을 했다. 내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면 30분 동안 때렸다. 그리고 다시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시 30분 동안 맞았다. 조사하던 사람이 때렸다. 구금된 기간 동안 두 명이 있었다. 한 명은 도 보위부 출신이고 다른 한 명은 시 보위부 출신이다. 조사 받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내가 쓰지 않으면 때렸다. 첫 한 달 동안 구타가 제일 심했다. 조사 받는 방에서 구타했다. 나무 막대기로 맞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보위원이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혹은 발로 머리와 얼굴을 구타했다. 보위원 \*\*\*\*\*는 도 보위부 출신으로 소좌였고 시 보위부 출신 보위원은 대좌였다. 내가 맞을 때 다른 보위원들도 방을 드나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구타하는 것을 봐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흔적이 남지 않도록 때렸다. 머리를 때리거나 뺨을 때렸다. 고통의 정도를 가장 아플 때를 10으로 보고 1부터 10 사이로 말하자면 5정도 아팠다. 구타 때문에 머리가 약해져서 골이 울렸다. 하지만 가장 모욕스러웠던 경험은 나를 끌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세웠을 때다. 비인간적이었다. 보위원들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욕을 했다... 구타 때문에 머리는 부어있었다. 모욕적이었다. 화가 났고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져서 복수하고 싶었다... 구타 이후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한 달 전 정도 일도 기억이 잘 안난다.”<sup>124</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나보고 말을 바꾸라고 압박했다... 3월 중순이었는데 한 번은 담당자가 내 몸 오른쪽을 서너 번 발로 찼다. 신발을 신은 채로 찼다. 이미 건강이 안좋았는데, 발로 차인 다음부터 더 걷기가 힘들어졌다.”<sup>125</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검찰소 성원이 나를 \*\*\*\*\* 검찰소로 데려갔다. 조사실에는 남자 한 명만 있었는데, 나를 [검찰소로] 데려갔던 사람 중 한 명이였다. 당이 허락하지 않는 \*\*\*\*\*를 했다고 자백서를 쓰라고 했다. 당의 규정과 정책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나는 의자에 앉았고, 남자는 나무 막대기로 나를 밀었다. 내가 반말을 할 때마다 말대꾸를 하지 말라고 했고 발로 찼다. 결국 기절했다.”<sup>126</sup> (2015년 검찰소)

“막대기를 들고 와서 나에게 욕설을 하면서,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 \*\*\*\*\*가 이미 맞고 있는 것을 봤고, 그만 때리도록 하려고 그 남자 집 주소를 댈 수 밖에 없었다.”<sup>127</sup> (2014년 보위원)

“그 곳에 구금됐을 때 가족이 식사를 가져왔다. 보위부가 벌 주고 압박하려고 가족이 가져 온 음식을 주지 않아서 굶

<sup>121</sup> KOR/18/0004

<sup>122</sup> KOR/18/0011

<sup>123</sup> KOR/19/0049

<sup>124</sup> KOR/19/0049

<sup>125</sup> KOR/19/0011

<sup>126</sup> KOR/18/0004

<sup>127</sup> KOR/19/0005

---

은 적이 몇 번 있다. 보위부 구류장 자체에서 밥을 주지는 않았다. 밥을 가져다 줄 가족이 없는 수감자에게는 보위부 계호가 자기들 밥을 좀 줬다.”<sup>128</sup> (2014년 보위부 구류장)

“보위원이 내가 중국에서 누굴 만났고 어떻게 중국으로 갔는지 물었다... 빵을 몇 차례 맛고 발길질을 당했다. 처음 7일동안 매일 조사받았다. 반탐과 과장과 중앙 보위부에서 온 보위원이 조사했다.”<sup>129</sup> (2014년 보위부 구류장)

“도 보위부 구류장에서 다섯 번 조사를 받았다.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담당한 보위원은 내가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영영 풀려날 수 없는 곳에 갈 거라고 말했다... 보위부가 운영하는 관리소를 말했다고 생각한다.”<sup>130</sup> (2014년 보위부 구류장)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조사 때 구타는 없었다.”<sup>131</sup> (2014년 보위부 구류장)

“조사받을 때 욕도 들었고 구타도 당했다.”<sup>132</sup> (2014년 보위부 구류장)

“조사받을 때는 맞지 않았지만, 구류장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맞고 처벌받았다. 담당자가 나가서 실제 사실인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받을 때 거짓말을 쓴 사람은 맞았다.”<sup>133</sup> (2014년 보위부 구류장)

“조사받는 동안 나무 막대기로 몸과 허벅지를 엄청나게 맞았다. 등과 다리에 멍이 들었다. [남성] 조사 담당자는 내 머리를 잡고 거칠게 흔들고 벽에 내동댕이 쳤다. 빵도 때렸다... 첫 나흘 간 조사 받으면서 맞았다. 조사는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했다... 혐의를 모두 부인했기 때문에 조사 담당자가 폭력을 휘둘렀다.”<sup>134</sup> (2014년 보위부 집결소)

“보안원이 나에게 질문을 몇 개 하고 구타했다...”<sup>135</sup> (2013년 보위부)

“군위는 조사 때 나를 짐승만도 못하게 대했다.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를 때렸다.”<sup>136</sup> (2013년 보위부)

“조사 때...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내가 저질렀다고 했다. 제기하는 혐의를 시인하지 않았다. 조사 때 나무 막대기로 나를 때렸다.”<sup>137</sup> (2013년 안전부 구류장)

“구류장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는데, 계호가 심하게 때렸다. 모두 남자였다. 구타도 당하고 욕도 들었다... 구류장에서 보름정도 있다가 안전부에 조사를 받으러 다시 보내졌고, 거기에 네 달 있었다. 조사관은 관련된 브로커 전원의 이름을 알려했고... 가족들에게 내가 돈을 보냈는지, 얼마를 보냈는지 물었다. 자백을 거부했고 그래서 심하게 맞았다.”<sup>138</sup> (2012)

---

<sup>128</sup> KOR/18/0029

<sup>129</sup> KOR/18/0029

<sup>130</sup> KOR/18/0029

<sup>131</sup> KOR/19/0004

<sup>132</sup> KOR/18/0035

<sup>133</sup> KOR/19/0051

<sup>134</sup> KOR/19/0046

<sup>135</sup> KOR/19/0010

<sup>136</sup> KOR/18/0058

<sup>137</sup> KOR/19/0044

<sup>138</sup> KOR/17/0123

“조사 시작 때 조사 담당 보위원이 내 손에 차고 있는 수갑 사슬을 때렸다. 손목이 아팠고, 며칠 간 아픔이 가시질 않았다.”<sup>139</sup> (2012년 보위부 구류장)

“보위부에 구금됐을 때 다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남성인 조사 담당 보위원이 일대일로 조사했다. 중국에 대해서 물었는데, 언제, 왜 중국에 갔고 가서 뭘 했는지 물었다. 조사 담당자에게 인신매매 당했다고 말했다. 속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처음에 조사 담당자가 뺨을 때리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다른 구금자들은 게호가 발로 차고 의자로 때렸다고 했다. 내가 진실을 말했는데도 조사 담당자가 뺨을 때렸다.”<sup>140</sup> (2011년 보위부 집결소)

“보위부에서 조사받았다. 발로 차였고 방망이로 맞았다. 보위부에서 학대를 받고, 대한민국으로 오겠다고 마음 먹었다... 나를 조사했던 보위원은 나를 때리고 싶은대로 때렸다. 나를 동물처럼 취급했다.”<sup>141</sup> (2011년 보위부 구류장)

“보위부 규정상 20일동안 조사할 수 있다. 우리를 범죄자 취급했다.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때렸다... 문서에 사실을 적으면 관리소로 보내져서 다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자백서에 거짓을 적었다. 조사 때 맞았지만, 대한민국에 올 계획이 없었다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대한민국으로 올 계획이었다고 말하면 관리소에 간다... 나는 중국 머물면서 돈을 벌러 갔다고 말했다. 내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더니 벽에 내동댕이쳤다.”<sup>142</sup> (2011년 보위부 구류장)

“사람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편한 자세를 하고 오랫동안 서 있어야 했다.”<sup>143</sup> (2011년 안전부)

“조사 담당자가 한 번 손으로 때린 적이 있다. 국경을 건너도록 도와준 사람 이름을 대지 않아서다... 다른 구금자들에게도 구타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sup>144</sup> (2010년 보위부 구류장)

“구금 시 조사를 받았다. 조사실로 데려가서 조사했다. 조사 담당자가 무릎을 꿇으라고 하더니 발로 찼다. 다른 사람 이랑 같이 잡혔기 때문이다... 우리 둘이 한 이야기가 서로 달랐다. 다른 방에서 그 여자가 맞았다고 들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됐지는 모른다.”<sup>145</sup> (2010년 보위부 구류장)

“[검사]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손으로 때렸다. 심하게 때린 것은 아니었다.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더니, 검사가 더 가혹한 형을 제기했다. 부당하다고 느꼈고, 정신적으로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다. 교화소에 구금되는 것 자체가 구타를 당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고문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sup>146</sup> (2010년 안전부 구류장)

<sup>139</sup> KOR/18/0031

<sup>140</sup> KOR/18/0032

<sup>141</sup> KOR/18/0081

<sup>142</sup> KOR/19/0042

<sup>143</sup> KOR/19/0042

<sup>144</sup> KOR/19/0013

<sup>145</sup> KOR/18/0027

<sup>146</sup> KOR/19/0032

---

---

## X.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구타 등 폭력 사용

“감방에 있을 때 항상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다. 실수로 움직이면 감방 문에서 창살까지, 감방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벌을 받았다.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나무 판자로 되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무릎이 까졌다.”<sup>147</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성별에 따라 처벌이 달랐다. 여성 구금자가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면 계호가 욕을 했지만, 협박성 이상의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성 구금자가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면 계호가 감방 반장을 시켜 때리게 했다.”<sup>148</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일하러] 중국에 가려고 했다고만 말했다. 체포되고 구금됐을 때 많이 맞긴 했지만 관리소에는 안 갔다.”<sup>149</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같은 감방 안에 대한민국에 가려고 시도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었다. 다리를 펼 수 있는 휴식이 10분 정도 있었는데, 그 여자는 소리를 내며 손가락 관절을 풀었다. 계호가 그 여자를 심하게 때려서 매일 두통을 겪었다... 열쇠꾸러미로 내 머리를 세 번 때리기도 했는데,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일어나지 않아서다. 머리에 흠이 났다.”<sup>150</sup> (2017년 보위부 집결소)

[남성] “안전부 구류장에서 담당 계호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계호원은 2시간 교대로 근무했다. 관찰은 계호원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계호원은 움직인다고 화목으로 때리거나 벌로 힘든 자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구금자가 양 팔을 앞으로 뻗고 오랜 시간 서 있는 자세를 말한다. 다른 벌로 뒷짐을 지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여러 번 시켰다. 구류장 안전부 계호원 두 명이 악명이 높았다. \*\*\*\*\*과 \*\*\*\*\*이다.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막대기로 때리는 등 처벌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sup>151</sup> (2017년 안전부 구류장)

“내가 속한 \*\*\*\*\*반이 지나갈 때... 반 소속 누군가가 밭에서 무 2개를 가져갔다. \*\*\*\*\*반 담당 계호는 \*\*\*\*\*이고, 폭력적이기로 유명했다. 계호원은 무를 가져가는 것을 보자마자 [수감자 가운데 한 명인] 밭 관리담당자들을 불렀다. 그 중 한 명이 \*\*\*\*\*다. 그래서 내가 풀려나는 날 [동료 수감자인] \*\*\*\*\*가 맞는 것을 봤다.”<sup>152</sup> (2016년 안전부 교화소)

“감방 밖에서 걸을 때 바닥을 봐야 해서 앞을 볼 수 없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뒤에 있던 계호가 뒤에서 옷을 잡아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잡아 끌었다. 그럴 때 내가 개처럼 느껴졌다.”<sup>153</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차에 보위원 두 명... 이 있었다. 보위원은 우리에게 욕을 했고, 내가 얼굴을 쳐다봤다며 뺨을 때렸다.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뺨을 맞았다.”<sup>154</sup> (2016년 보위원)

---

<sup>147</sup> KOR/18/0053

<sup>148</sup> KOR/19/0002

<sup>149</sup> KOR/19/0002

<sup>150</sup> KOR/19/0016

<sup>151</sup> KOR/19/0050

<sup>152</sup> KOR/19/0011

<sup>153</sup> KOR/19/0010

<sup>154</sup> KOR/19/0008

“감방 안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쳐다본 자세로 앉아 있었다. 눈알도 굴리면 안됐다. 움직이면 벌을 받았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게 너무 힘들어서 조금 움직였다. 벌로 팔굽혀펴기 100번을 하라고 했다. 30번을 겨우 했고, 팔굽혀펴기 말고 다른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금속 막대기로 두 번 맞았다.”<sup>155</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감방 안에서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몸을 움직이면 벌로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은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았고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한동안 있었다.”<sup>156</sup> (2016년 보위부 집결소)

“구금자는 벌로 허리를 숙여서 발목을 잡은 상태로 있거나, 등 뒤로 손각지를 끼고 여러 번 앉았다 일어나기를 했다.”<sup>157</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구타가 있었다. 말을 안 듣거나 일을 제대로 안하면 맞았다. 손으로 맞았다.”<sup>158</sup> (2016년 노동단련대)

“화목반 담당 보안원이... 구금자들이 도망하려고 할 때 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sup>159</sup> (2016년 안전부 교화소)

“내가 풀려나기 며칠 전에 도망치려고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반장, 조장, 감시 담당자가 [모두 수감자로 각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독방[1m x 1m]에 갔다. 일주일 동안 24시간 내내 갇혀 있었다. 보안원도 처벌을 받았다. 보안원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쓰고, 하전사도 뭘 잘못했는지 쓰고 추가로 일을 해야 했다.”<sup>160</sup> (2016년 안전부 교화소)

“인민군과 보안원은 폭력을 많이 썼다. 우리가 뭘 잘못하면 때리고 발로 찹기 때문이다. 어떻게 행동하고 보안원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공부를 많이 해야 했다. 어떤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는지, 맞을 때 반항하지 않는 등에 대한 지시 사항이 있다. 지시 사항에 구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점잖은 말로 써놓았다.

규정 상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문장이 있었다. 우리를 때린 보안원들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는거라고 했다.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1, 2년 정도 형이 더 길어진다고 했다. 법에 따라 수감자가 처벌을 받으면 보안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도록 하지 않았다.

청결 등 일상에서 따라야 할 행동 수칙뿐 아니라, 보안원에게 갖춰야 할 예절에 대한 규정도 있었다. 보안원에게 갖춰야 할 예절에 관한 규정이 가장 부당했다. 보안원이 우리를 부르면 최대한 빨리 가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보안원 1미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다음 보안원 얼굴을 보지 않아야 한다. 보안원이 복도를 걸어갈 때 우리가 5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벽 쪽으로 몸을 돌려 보안원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보안원이 순찰 임무로 감방 안에 들어오면 둘러보는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을 보고 있어야 했다. 너무 화가 났다.

<sup>155</sup> KOR/19/0008

<sup>156</sup> KOR/19/0008

<sup>157</sup> KOR/19/0003

<sup>158</sup> KOR/19/0003

<sup>159</sup> KOR/18/0078

<sup>160</sup> KOR/18/0078

---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구타를 목격했다. 수감자 수는 500명이 넘었다... 보안원은 수감자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주먹질을 했다. 여성 보안원은 벨트를 풀러 [벨트로] 때렸다. 전체적으로 남성 보안원이 더 많았고, 여성 보안원은 대기실에 배정되어, 수감자가 어떤 작업을 할지 결정하는 일을 담당했다.

여성 보안원이 남성 보안원보다 수감자를 더 가혹하게 다뤘다. 구타는 남성 보안원이 더 심하게 했지만, 여성 보안원은 험한 말을 더 많이 했고 계속 우리를 압박했다.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폭행하는 것이다.

행동 수칙으로 웃거나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바보처럼 행동하거나 일을 하기 싫다고 말하면 안됐다. 도둑질을 하거나 싸움에 휘말려도 안된다. 이런 행동을 이유로 보안원에게 맞았다.

\*\*\*\*이 맞는 것을 봤다. 구타를 당한 후 감방으로 돌아갔다. 걸을 수가 없어서 동료 수감자가 끌고 갔다.”<sup>161</sup> (2016년 안전부 교화소)

“구류장 안에서 앉은 채로 있어야 했다... 움직이면 맞았다.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맞았고 말도 하면 안됐다. 너무 허리를 깊이 숙여서 인사를 해도 안되고 너무 위를 쳐다봐도 안됐다. 쇠창살이 있었는데, 한번은 계호가 나에게 쇠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라고 한 후 때렸다.”<sup>162</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남성] “감방 안에서 나무방망이로 사람들이 맞아서 머리에 피가 나는 것을 봤다.”<sup>163</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밤 10시가 되면 모두 누워서 담요를 가슴께까지 덮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동시에 눕지 못하거나 누군가가 움직이면 몇 번이고 다시 눕도록 했다. 한 번은 밤새 다시 눕도록 했다.”<sup>164</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나는 맞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심하게 맞고 얼굴이 붓는 일이 있었다.”<sup>165</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우리는 7번 감방에 있었다. [계호원] \*\*\*\*는 6번 감방의 수감자들과 말을 하고 있었다. 우리도 들을 수 있었다. \*\*\*\*가 시끄러워서 짜증이 난다는 식으로 투덜거렸다. \*\*\*\*는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를 때렸다.”<sup>166</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남자 감방 뒤편에 독방이 3개 있었다.”<sup>167</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재판 받기를 기다리는 기간동안 말을 하지 않은 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도록 했다.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을 흠뻑 맞았다. 물을 닦으라고 하지 않으면 닦을 수 없었다.”<sup>168</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집결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심한 폭력을 목격했다. 복송된 다음 집결소에 구금된 남자가 있었다... 보안원이 다른

---

<sup>161</sup> KOR/18/0078

<sup>162</sup> KOR/18/0079

<sup>163</sup> KOR/19/0049

<sup>164</sup> KOR/19/0010

<sup>165</sup> KOR/19/0011

<sup>166</sup> KOR/19/0011

<sup>167</sup> KOR/19/0011

<sup>168</sup> KOR/19/0004

수감자한테 그 남자를 때리라고 했다. 그 때 북쪽 사람들의 악마같은 면을 보았다. 내가 풀려나기 직전에 그 일이 있었다. 내가 나올 때 그 남자는 맞아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남자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30대 중반이었다.”<sup>169</sup> (2014년 안전부 집결소)

“방망이를 들고 왔다. 감방 수감자 중에 반장이 있었다. 반장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다... 나는 말대꾸를 하면 안 됐다. 대답을 하든 대답을 하지 않든 무조건 맞았다. 뺨을 맞았다. 발차기를 당했다. 똑바로 서 있지 않는다고 온 몸을 발로 찼다. 감방 안 수감자 모두가 그날 맞았다. 다음날부터 나는 숨쉬기가 어려웠다...”<sup>170</sup> (2014년 안전부 집결소)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 도망가다 잡히면 맞았다. 한 번은 도망가려고 했던 수감자가 밤새 뛰 어다니는 벌을 받았다.”<sup>171</sup> (2014년 로동단련대)

“로동단련대 소장이 구금자들에게 구타를 명령했다. 탈출하려고 한 다른 구금자를 구타하거나, 심지어 일을 하러 오 다가 마주친 가족이랑 말을 섞은 구금자들도 구타하도록 했다. 심하게 때려서 명이 들거나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다.”<sup>172</sup> (2014년 로동단련대)

“안전부 구류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맞았다. 구류장 규칙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주고 30분 동안 외우라고 했다. 그리고 암기해서 말로 해야 했다. 쓰여진 그대로 똑같이 말해야 했다. 한 글자도 다르면 안됐다. 암기를 하지 못해서 맞았다. 나는 감방 안에 있었고, 나를 때린 사람은 감방 밖에 있었다. 계호가 쇠창살 앞에 머리를 대라고 해서 감방 밖에서 신발을 신은 채 발로 찼다. 구류장 안 계호원 모두를 관리하는 계호원이었다. 감방 안에 기존에 있던 구금자가 있었고, 나를 포함해서 세 명이 새로 왔다. 우리 세 명 모두 규칙을 외우지 못해서 맞았다. 계호가 발로 머리를 차서 두통이 있었다. 이마를 콘크리트 바닥에 대고 있었고, 계호가 뒤에서 찼다. 이마에서 피가 났고 두통이 있었다.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어야 했는데, 감방 밖에 있는 계호와 눈을 마주치면 안됐다. 규칙을 제대로 다 알고 있지 못해서, 해당 규칙을 알지 못한 채 계호랑 눈을 마주쳤다. 내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감방 안 구금자 모두가 벌을 받았다. 등 뒤로 손가락지를 끼고 여러 번 앉았다 일어났다. 벌을 받다가 내가 기절했고, 계호가 다른 구금자들을 시켜 자기 쪽으로 끌고 오도록 해서 또 머리를 발로 찼다. 구타로 정신을 잃었다. 하루 지나서 아침에 일어나보니 귀에 피가 나 있었다. 지금도 두통이 있고, 아마도 구류장에서 구타를 당한 후유증인 것 같다.”<sup>173</sup> (2014년 안전부 구류장)

“나는 맞지 않았다. 나랑 동갑인 여자가 심하게 맞았다. 계호가 굉장히 두껍고 딱딱한 신발 밑창으로 얼굴을 때렸다. 굉장히 심하게 때렸다.”<sup>174</sup> (2013년 안전부 구류장)

“다른 구금자랑 싸웠다가 닷새 동안 독방에 갇혔다. 나랑 싸운 구금자가 계호에게 뇌물을 주고 나를 벌 주게 했다. 독방은 가로 1미터, 세로 1.2미터, 높이 1.5미터 정도 됐고 추웠다. 내 키가 1미터 55인데, 일어설 수도 없었고 누울 수도 없었다. 바닥에 작은 뚜껑이 있었는데, 화장실로 썼다.”<sup>175</sup> (2013년 안전부 교화소)

<sup>169</sup> KOR/18/0029

<sup>170</sup> KOR/19/0004

<sup>171</sup> KOR/18/0029

<sup>172</sup> KOR/18/0075

<sup>173</sup> KOR/19/0051

<sup>174</sup> KOR/19/0010

<sup>175</sup> KOR/17/0123

---

---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별로 형을 더 길게 받고, 일할 때 쉬는 시간이 없었고, 총화 때 비판을 받았다. 집결소 당국에서 다른 구금자를 부추겨서 때리게도 했다.”<sup>176</sup> (2013년 안전부 집결소)

“말을 듣지 않는 노동자를 때리는 일들이 여기도 있었다.”<sup>177</sup> (2013년 로동단련대)

“할당량을 끝내지 못하면 밥을 덜 주거나 욕을 먹었다. 할당량에 많이 미치지 못하면 맞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sup>178</sup> (2013년 안전부 교화소)

“\*\*\*\*\*는 20대였는데, 독방에서 죽었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나서 구금자들은 김정일에 대해 글을 써야 했다. \*\*\*\*\*는 미화하지 않고 쓰고 싶은대로 썼다. 먹을 음식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상적으로 잘못됐다며 독방에 갇혔다. 8일 후에 사망했다.”<sup>179</sup> (2013년 안전부 교화소)

“수감자들이 맞는 것을 봤다. 삽 손잡이로 허리, 다리 등 신체 여기저기를 때렸다. 일을 할 때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가족 면회 후에 담당자나 로동단련대 관리자에게 담배를 주지 않았다고 맞았다. 지도원이랑 관리자 다 구타에 가담했다. 지도원은 보안서 소속이지만, 단련대에서는 안전부 정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었다. 로동단련대 안팎에서 구타가 있었다.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도 구타가 있었다. 몇 번 구타를 목격했는지 셀 수도 없다. 거의 매일 구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타 때문에 코피가 나거나 팔다리가 붓거나 했다. 사람들이 상처가 낫지 않거나 계속 아프더라도 나는 알지 못했다.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도원이 나에게 담배나 뇌물을 주는 등 잘하라고 했다. 로동단련대 관리자도 담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난 그럴 수가 없었다. 단련대에 있는 동안 관리자에게 위협을 당했고 맞기도 했다. 머리를 때렸다. [구타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울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했다.]”<sup>180</sup> (2013년 로동단련대)

“구류장 안에서 맞고 학대를 당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구류장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 계호가 나랑 감방 안 다른 구금자에게 물을 한 양동이만큼 뿌렸다. 우리 모두 흠뻑 젖었고, 젖은 옷을 입고 있어야 했다.”<sup>181</sup> (2013년 안전부 구류장)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해야 했다. 수감자 다수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공부를 잘 못했고, 규칙을 외우거나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었을 때 즉각 대답하는 일을 어려워했다. 나는 간신히 규칙은 외웠지만 나이가 많은 수감자 다수는 외우기 어려웠다. 이 때도 단체로 벌을 받았다. 벽에 붙어서 2시간 동안 서 있는 벌을 받았다.”<sup>182</sup> (2012년 로동단련대)

“구류장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움직이면 안됐다. 움직여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별로 500번에서 1000번 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했다.”<sup>183</sup> (2011년 보위부 구류장)

---

<sup>176</sup> KOR/18/0058

<sup>177</sup> KOR/18/0058

<sup>178</sup> KOR/19/0032

<sup>179</sup> KOR/19/0032

<sup>180</sup> KOR/19/0036

<sup>181</sup> KOR/19/0044

<sup>182</sup> KOR/19/0043

<sup>183</sup> KOR/18/0081

“조사실에 갈 때 걸어갈 수 없었다. 네 발로 기어가야 했다.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맞았다.”<sup>184</sup> (2011년 보위부 구류장)

“교화소에 갇히는 것 자체가 구타를 당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고문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sup>185</sup> (2010년 안전부 구류장)

“시 보위부 과장, 도 보위부 사람과 서기가 와서 새벽 2시에 나를 체포했다.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새벽 4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남편 행방을 물었다. 남편을 찾고 나서 남편을 때렸다. 얼굴에 맞은 자국이 있었고 걷지 못했다. 구류장에서 어떤 여자가 심하게 맞는 것도 봤다.”<sup>186</sup> (2009년 보위부 구류장)

## XI. 강제 노동

“집결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다. 밭에 가서 벼단을 묵기도 했고, \*\*\*\*\* 공사장에서 낮은 높이의 콘크리트 벽을 쌓기도 했다.”<sup>187</sup> (2017년 안전부 집결소)

“로동단련대에서 겨울에는 나무를 했다. 점심 전에 나무를 베러갔다. 오후에는 또 나무를 하러 가거나 나무를 팠다. 눈이 오면 눈도 치웠다.”<sup>188</sup> (2016년 로동단련대)

“수감자 일부는 교화소 밖으로 일을 하러 갔다. 농사일, 광산일, 화목이나 남새 줌의 일 등을 했다. 수감자 10명당 군인 2명이 감시했다.”<sup>189</sup> (2016년 안전부 교화소)

“목걸이의 금속 고리 부분을 손으로 조립했다. 외화를 벌려고 시키는 일이었고, 중국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구금자를 모두 범죄자로 여기고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이 일에 동원됐다. 하지만 돈은 받지 못했다. 대신 우리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집결소를 짓는 데 썼다. 일이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집결소에서 일했던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다. 너무 화가 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수감자가 목걸이 금속 고리를 조립하는 데 동원됐다. 하루에 1kg을 생산하도록 할당됐는데, 그 양만큼 조립하기 정말 어려웠다.

매일 아침 7시에 할당량을 채웠는지 확인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수감자는 맞았다. 나는 맞기 싫어서 잠도 자지 않고 일했다. 자려고 눕지도 않았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제대로 음식도 주지 않고, 일만 시켰다. 맨손으로 일했고 손이 아팠다. 점점 능률도 떨어졌다.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같은 감방 수감자들에게 잠깐만 다같이 자자고 했다. 근데 밤새 자버렸고 아침에서야 깬다. 목걸이 고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무게를 재러 왔다.

방망이를 들고 왔다. 감방 수감자 중에 반장이 있었다. 반장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다... 나는 말대꾸를 하면 안됐

<sup>184</sup> KOR/19/0042

<sup>185</sup> KOR/19/0032

<sup>186</sup> KOR/19/0015

<sup>187</sup> KOR/18/0053

<sup>188</sup> KOR/19/0003

<sup>189</sup> KOR/18/0078

---

---

다. 대답을 하든 대답을 하지 않든 무조건 맞았다. 뺨을 맞았다. 발차기를 당했다. 똑바로 서 있지 않는다고 온 몸을 발로 찼다. 감방 안 수감자 모두가 그날 맞았다. 다음날부터 나는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내 상태를 전했지만 무시당했다.”<sup>190</sup> (2014년 안전부 집결소)

“낮에는 아침 8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했다. 총을 가지고 있는 계호가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감시했다. 북중 합작 회사를 위해 문짝용으로 만들어진 철판을 잘랐고, 직원 심부름을 했다. 공사일에도 동원됐다. 아파트 공사장에 시멘트를 날랐다. 가을에는 작물 수확에도 동원됐다.”<sup>191</sup> (2014년 안전부 집결소)

“마을에서 여러 일을 했다... 끝내야 할 할당량이 주어졌다. 할당량을 끝낼 때까지 일했다. 심할 때는 새벽 1시나 2시까지 일해야 했다.”<sup>192</sup> (2014년 로동단련대)

“수감자는 건설 등 여러 육체 노동에 동원됐다.”<sup>193</sup> (2014년 로동단련대)

“강제로 일에 동원됐고 남새를 키웠다. 총을 소지한 계호가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감시했다.”<sup>194</sup> (2014년 안전부 교화소)

“로동단련대가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힘든 일은 단련대 수감자가 했다고 보면 된다. 땅을 파거나 건설을 하는 데 배정됐다. 17살, 18살부터 50살까지 50명 내지 60명 정도와 함께 일했다. 18살짜리는 대한민국 노래가 녹음된 씨디를 들고 춤을 췄다는 이유로 단련형을 받았다. 아침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일하고, 다시 오후 1시부터 5시 혹은 6시까지 일했다. 계호가 일하는 동안 우리를 감시했다.”<sup>195</sup> (2014년 로동단련대)

“구금자에게 일을 하도록 시켰다.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출용 옷을 만들었다. 계호에게 뇌물을 주지 않는 이상 시간 내내 일을 한다.”<sup>196</sup> (2013년 안전부 교화소)

“조사가 끝나고 공사일에 배정됐다. 모래를 옮기는 등 비슷한 육체 노동에 동원됐다. 새벽 4시에 시작해서 새벽 6시 반까지 일을 할 때도 있었다. 씻고 아침먹고 다시 아침 8시부터 정오까지 일을 하고 점심을 먹는다. 다시 오후 1시에 일을 시작해서 6시에 저녁을 먹는다. 저녁 먹고 나서도 일할 때가 있었다. 완수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 관리자는 우리를 말이나 소처럼 대했다. 총기를 소지한 계호가 일을 하는 동안 우리를 감시했다.”<sup>197</sup> (2013년 안전부 집결소)

“수제 가발을 만드는 일을 했다. 낮에는 점심 시간에 쉬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또는 7시까지 일했다. 가발을 많이 만들어야 할 때는 밤 9시나 10시까지 일했다... 할당량을 끝내지 못하면 밥을 덜 주거나 욕을 먹었다. 할당량에 많이 미치지 못하면 맞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sup>198</sup> (2013년 안전부 교화소)

“단련대에서 한 일 중에 단련대 관리자 집에 가서 관리자 텃밭 김을 매고 재배하는 일도 있다. 담을 쌓는 등 로동단

---

<sup>190</sup> KOR/19/0004

<sup>191</sup> KOR/18/0029

<sup>192</sup> KOR/18/0029

<sup>193</sup> KOR/18/0035

<sup>194</sup> KOR/18/0060

<sup>195</sup> KOR/18/0075

<sup>196</sup> KOR/17/0123

<sup>197</sup> KOR/18/0058

<sup>198</sup> KOR/19/0032

련대에서 해야 할 일도 있었다. 나무도 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했고, 점심 시간 10분 말고는 휴식 시간이 없었다... 단련대 옆에 산이 있어서 산에 돌을 주우러 올라가기도 했다. 바위가 굴러서 아래에 있던 사람이 다치기도 했다. 단련대 수감자들이 다리를 다친 것도 봤다. 어디에 보내서 치료를 했는지는 보지 못했다.”<sup>199</sup> (2013년 로동단련대)

“인민군 군인 옷을 바느질 했다... 하루에 15벌을 만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8벌 밖에 만들지 못했다. 할당량을 채우려고 잠을 덜 잤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을 받거나 밥을 적게 받는다.”<sup>200</sup> (2015년 안전부 교화소)

“노동을 해야 했다. 자갈과 모래를 나르고 필요하면 눈을 치웠다...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고 30분 정도 휴식 시간이 있었다.”<sup>201</sup> (2012년 안전부 집결소)

“농사반으로 옮겼다. 35명 정도 여자들과 같은 감방에 있었다. 농사일에 동원됐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감방 검사를 5시 30분에 했다. 아침은 7시에 먹고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일했다. 밥을 먹으러 돌아왔다가 다시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일했다.”<sup>202</sup> (2012년 안전부 교화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2시간 동안 일했다. 8시에 아침을 먹고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일했다. 12시부터 점심을 먹고 30분간 휴식했다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 또는 6시까지 일했다. 2시간 동안 저녁을 먹고 씻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10대 원칙, 규정, 범죄별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공부했다.

군 내에서 힘든 일을 해야 했다. 일반 사람들이 하기 어렵다고 할 일이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산비탈이 무너져서 도로에 흙이 떨어지면, 우리가 흙을 치우고 돌로 벽을 쌓아서 안전하게 만들었다. 홍수로 피해가 나면 복구했다. 국가적으로 하는 공사에서 쓸 나무를 베러 산에도 갔다.

기계 도움을 받지 못했다. 다 손으로 했다. 여자들은 돌을 자루에 담아 끌고 갔고 남자들은 돌을 받아서 벽을 쌓았다. 큰 사고는 많지 않았다. 사람이 다쳐도 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시 형을 살려 가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로동단련대에서 보호 장비나 안전 지침을 주지 않았다. 말하는대로 해야 한다. 얼어 있는 물로 뛰어들라고 하면 뛰어 들어야 한다. 할당량과 목표치가 있었다. 할당량과 목표치를 다 채워야 했다.”<sup>203</sup> (2012년 로동단련대)

“\*\*\*\*\* 안전부 집결소로 이관되서 5개월 동안 구금됐다. 집결소에서 돈을 벌도록 동원됐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은 안전부가 받았다. 천 위에 구슬을 달면 중국으로 수출해서 외화를 버는 일을 했다.”<sup>204</sup> (2011년 안전부 집결소)

“우리는... 아침 6시나 6시 30분에 일어나서 \*\*\*\*\*에 있는 마을에 가서 선전 선동 노래를 불렀다.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했고 밤 10시에 잤다. 점심 전에 3시간 반 동안 일했고, 점심 먹고 3시간 반 동안 일했다. 남자는 산에서 나무하는데 동원됐고, 여자는 들쭉을 따거나 농지에서 김을 땀다. 단련대 안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단련대 밖에서 일할 때 수감자 10명 당 계호원 두 명이 같이 가서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우리

<sup>199</sup> KOR/19/0036

<sup>200</sup> KOR/19/0044

<sup>201</sup> KOR/18/0031

<sup>202</sup> KOR/18/0032

<sup>203</sup> KOR/19/0043

<sup>204</sup> KOR/18/0032

---

가 일을 너무 천천히 하면 단련대 형이 늘어날 수도 있었다.”<sup>205</sup> (2011년 로동단련대)

“\*\*\*\*\* 안전부 집결소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 광산, 공사장, 농장에 보내서 일을 했고, 화장실 배수구에서 오물을 치우기도 했다.”<sup>206</sup> (2011년 안전부 집결소)

## XII. 신체 수색

“\*\*\*\*\* 보위부 구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다 표시해서 확인했다. 여자 담당자 네 명이 와서 네 명씩 별도 방으로 데려갔다. 일대일로 알몸 수색을 했다. 방 안에 총 여덟 명이 있었다. 수감자 네 명과 계호 네 명이다. 수감자는 옷을 완전히 벗었다. 처음에 여자 담당자가 자궁\*에 숨긴 것이 있는지 물었다. 모두 없다고 했다. 열 번 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켜서 우리가 자궁에 숨긴 것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런데 같이 방에 있던 여자 한 명이 생리 중이어서 창피 해하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저항했다. 그랬더니 담당자들이 기분 나빠하며, 그 여자 생리대를 가져가서 확인했다. 그리고 우리 자궁을 검사했다. 생리 중인 여자도 포함이다. 손가락을 사용해서 수색했다.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 3 일 후에 나를 포함해서 20명 이상이 \*\*\*\*\*도에서 \*\*\*\*\* 보위부 도 집결소로 이관됐다. 소지품을 또 확인했고, 다 다른 감방으로 보냈다. 감방 세 개는 여자, 두 개는 남자 수감자를 구금했다. 여기서 알몸 수색을 또 받았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했다. 다만 이번에는 자궁 검사는 없고 앉았다 일어서기만 했다.”<sup>207</sup> (2017)

“...여자 담당자가 나를 수색했다. 옷을 다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0번 하라고 했다. 내 자궁에 숨긴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 같다. 50번을 다 하지 못했더니 100번을 더 하라고 했다. 다음에 \*\*\*\*\*로 이관됐다... 여성 담당자가 또 알몸 수색을 했고, 또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켰다. 다음에 \*\*\*\*\*로 이관되서 여자 담당자가 똑같이 몸 수색을 했다. 마지막으로 \*\*\*\*\*로 이관되서 똑같이 몸 수색을 받았고, 이번에도 여자 담당자가 수색했다. 내가 체포된 날 이 일이 모두 일어났다.”<sup>208</sup> (2017년)

“\*\*\*\*\*보위부에 도착했더니 옷을 다 벗으라고 했다. 보위원이 몸에 숨긴 것이 있는지 수색했다. 의료 목적의 검진은 아니었다. 여성 담당자가 몸 수색을 했다.”<sup>209</sup> (2017년 보위부 시설)

“우리가 주머니에 돈을 숨겼는지 확인하려고 몸을 수색했다. 중국과 북에서 다 몸 수색을 받았고, 매번 알몸 수색을 받았다. 다른 여자들과 같이 방으로 가서 여자 보위원이 수색했다.”<sup>210</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남성] “체포된 후에 몸 수색을 받았는데, 옷을 다 벗으라고 했다. 옷 솔기를 모두 살폈다. 체강을 포함한 강도 높은 몸 수색은 없었다.”<sup>211</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

<sup>205</sup> KOR/19/0037

<sup>206</sup> KOR/19/0042

\*(번역주) 본 문서에 포함된 진술을 제공한 면담대상자 대다수는 해당 부위를 영어로 “womb”에 해당하는 “자궁”으로 지칭했으나, 통역 시 “체강”에 해당하는 “cavity”나 “질”에 해당하는 “vagina”로 통역했다.

<sup>207</sup> KOR/19/0014

<sup>208</sup> KOR/18/0050

<sup>209</sup> KOR/18/0053

<sup>210</sup> KOR/19/0002

<sup>211</sup> KOR/19/0050

“남자 의사가 와서 우리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 의사가 우리 몸 특정 부위들을 검사했다. 어떤 질병에 대한 검사였는지는 모른다. 우리 세 명이 동시에 검사를 받았고, 세관 건물 왼쪽에 있는 작은 방에서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두 방 사이에 문은 없었고 큰 방에 있는 남성 담당자가 검사하는 내내 우리를 보고 있었다.”<sup>212</sup> (2017년 세관)

“보위부에 구금됐을 때 우리 피를 뽑아갔다. 옷을 다 벗으라고 하더니 여자 계호가 몸을 수색했다.”<sup>213</sup> (2017년 보위부 집결소)

“구금됐을 때 너무 힘들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몸을 또 수색했다. 이번에는 여자가 몸을 수색했다. 보안원은 아니었고, 집결소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여자였다. 몸을 수색해서 돈을 숨겼는지 확인했고, 은밀한 부위도 수색했다. 자궁을 수색했다. 새로운 시설로 이관될 때마다 매번 몸 수색을 당했다.”<sup>214</sup> (2017년 안전부 집결소)

“군복을 입은 여자 두 명이 몸을 수색했다. 옷을 다 벗으라고 하더니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하라고 했다. 옷 솔기를 다 확인했다.”<sup>215</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 보위부에서 여자 담당자 두 명이 알몸 수색을 했다. 자궁도 확인하고 옷 솔기를 모두 확인했다. 몸 수색의 일환으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했다.”<sup>216</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집결소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강제로 벗도록 했다. 돈을 숨겼는지 확인했다. 구류장 여성 수감자가 와서 확인했다. 계호는 모두 남자였다. 여성 수감자가 나를 알몸 수색하는 동안 계호는 밖에서 모두 기다렸다. 남자가 여자 몸 수색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여자는 항상 여자가 수색했다. 피검사를 해서 전염병이 있는지 확인했다.”<sup>217</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처음 안전부 구류장에 갔을 때 알몸 수색을 당했다. 알몸 수색은 남자가 할 때도 있고 여자가 할 때도 있다.”<sup>218</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이번에는 보위부 여자 의사가 알몸 수색을 했다. 별도 방에서 옷을 완전히 벗으라고 했고, 의사가 금속 도구를 써서 자궁 속을 확인했다. 돈을 숨겼는지 봤다. 이런 수색을 받으면서 굴욕적이고 인권이 침해됐다고 느꼈다.”<sup>219</sup> (2015년 보위부 집결소)

“몸 수색을 하려고 여자 군인이 방에 같이 있었다. 생리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알몸이었다. 열 번 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했다. 자궁 안에 돈을 숨긴 여자들이 있었고, 돈을 숨기려고 삼키기도 했다. 잘 되면 돈을 숨길 수 있었다. 은밀한 곳을 손으로 직접 확인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수술 장갑을 끼고 확인했다.”<sup>220</sup> (2014년 보위부 구류장)

<sup>212</sup> KOR/18/0053

<sup>213</sup> KOR/19/0016

<sup>214</sup> KOR/18/0053

<sup>215</sup> KOR/18/0079

<sup>216</sup> KOR/19/0008

<sup>217</sup> KOR/18/0009

<sup>218</sup> KOR/19/0004

<sup>219</sup> KOR/19/0001

<sup>220</sup> KOR/19/0004

---

“보위부와 안전부 구류장에서 전신 수색을 받았다. 보위부 구류장에서 담당자가 옷을 전부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여러 번 하도록 했다. 내가 숨기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 안전부 구류장에서도 똑같이 몸 수색을 했다.”<sup>221</sup> (2014년 보위부 및 안전부 구류장)

“도착해서 첫 이주 동안 \*\*\*\*\* 보위부에서 조사받았다... 옷을 벗도록 했다. 완전히 다 벗었다. 돈을 숨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몸을 수색했다... 여자가 알몸 수색을 했다.”<sup>222</sup> (2014년 보위부 구류장)

“우리도 옷을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200번 하라고 했다. 돈을 숨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sup>223</sup> (2014년 보위부 구류장)

“군이가 계속해서 나를 조사했다... 몸에 숨긴 것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내 몸을 수색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sup>224</sup> (2013년 보위부 시설)

“보안서에서 조사를 받도록 보내졌는데, 보안원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여자가 우리 옷을 벗겨서 수색하도록 했다.”<sup>225</sup> (2013년 안전부 구류장)

“여자 보위원 세 명이 우리에게 옷을 모두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번 하도록 했다. 옷 솔기를 모두 확인하더니, 앉았다 일어서기를 또 다시 100번 하도록 했다.”<sup>226</sup> (2012년 보위부 구류장)

“안전부 계호가 창살 반대편에 서서 바라보면서, 나보고 옷을 벗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라고 했다.”<sup>227</sup> (2012년 안전부 집결소)

“처음에 몸 수색이 있었다. 옷을 다 벗으라고 하더니, 담당자가 내 몸과 옷을 모두 확인해서 위협이 될만한 것이 없는지 확인했다. 중국에서 가져 온 전화번호가 없는지도 확인했다. 여자 두 명이 몸 수색을 했다.”<sup>228</sup> (2012년 보위부 구류장)

“초소 안에 있는 방으로 갔다. 거기서 여자가 알몸 수색을 해서 돈을 숨기지 않았는지 봤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스무 번 시켜서 자궁 속에 숨긴 것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 여자는 민간인으로 신체 수색을 하려고만 왔다. 담당자 전원이 남자였기 때문이다.”<sup>229</sup> (2011년 국경 초소)

“두 번 더 수색이 있었다. 처음에는 여자 보위원이 똑같은 방식[알몸 수색 및 앉았다 일어서기 20회]으로 수색했다. 두번째는 다른 방으로 가서 담당 보위원이 요리를 담당하는 여자에게 나를 수색하도록 명령했다. 처음 받았던 두 번

---

<sup>221</sup> KOR/19/0051

<sup>222</sup> KOR/18/0035

<sup>223</sup> KOR/18/0075

<sup>224</sup> KOR/18/0058

<sup>225</sup> KOR/19/0010

<sup>226</sup> KOR/19/0030

<sup>227</sup> KOR/18/0031

<sup>228</sup> KOR/18/0031

<sup>229</sup> KOR/18/0077

의 수색과 마찬가지로 방식을 따랐다.”<sup>230</sup> (2011년 보위부 집결소)

“내가 이관되고 나서 보위원이 몸 수색을 했다. 우리 네다섯 명 여자 모두는 알몸으로 몸 수색을 받았다. 사복을 입은 여자가 몸 수색을 했다. 보위원일거라고 생각했다. 강도 높은 몸 수색이었다. 앉아서 다리를 뻗어보라고도 했다. 여자 보위원이 손가락으로 자궁을 확인했다. 자궁을 수색할 때 쳐다보지 못하도록 해서 장갑을 끼는지 모르겠지만, 껴줄 수 있다.”<sup>231</sup> (2010년 보위부 구류장)

### XIII. 강간 및 성희롱

“재판 전 안전부 감찰과 지도원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내가 저항했다.”<sup>232</sup> (2015)

“군역이 계속해서 나를 조사했다... 몸에 숨긴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내 몸을 수색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sup>233</sup> (2013년 보위부 시설)

“우리 가족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중국돈 700원을 냈다. 예심과장 \*\*\*\*\*이 여동생에게 성접대를 요구했고, 요구를 들어줬다.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때 스무살도 안됐었다. 뇌물도 주고 여동생이 성폭력을 당했지만, 내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sup>234</sup> (2013년 안전부 구류장)

“관리자가 여자랑 성관계를 맺는 것을 봤다. 빨리 자리를 뜨고 아무 것도 못 본 척 했다. 여자에게도 이야기 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안했다. 관리자는 농장반 담당 계호원이었다. 성이 \*\*\*\*\*였다. 사실 여성 구금자를 성폭행하기로 유명했다.”<sup>235</sup> (2012년 안전부 교화소)

“[여성 구금자인] \*\*\*\*\*는 집결소 소장과 경비 둘 다와 잤다.”<sup>236</sup> (2012년 안전부 집결소)

### XIV. 강제 낙태

“나는 맞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에서 임신을 한 여자가 있어서, 계호들은 아이에게 중국인 피가 섞였다는 것을 알았다. 북측 법에 따르면 북 여성은 혼혈 아이를 낳으면 안돼서 문제가 됐다. 여자는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았지만 안전부 집결소 의사가 낙태를 하라고 말했다. 여자는 강제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교화소로 보내졌다... 내 안전부 연락 담당자가 \*\*\*\*\* 안전부에서 낙태를 시키고 여자를 교화소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고, 더는 모른다고 했다. 혼혈 아기를 강제로 낙태하도록 하는 법에 따르면, 군 보안서장과 상의를 하고 해당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sup>237</sup>

<sup>230</sup> KOR/18/0077

<sup>231</sup> KOR/18/0027

<sup>232</sup> KOR/19/0004

<sup>233</sup> KOR/18/0058

<sup>234</sup> KOR/19/0044

<sup>235</sup> KOR/18/0032

<sup>236</sup> KOR/18/0077

<sup>237</sup> KOR/19/0001

---

(2015년 안전부 집결소)

“다른 여성 \*\*\*\*\*도 임신 8개월이었다. 우리 모두를 군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 여자는 주사를 맞았는데, 태아를 죽여서 유산시키는 주사이다. 근데 태아가 나오지 않아서, 듣기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낙태 수술 후에 다른 치료 없이 집결소로 바로 돌아왔다. 약이나 처방이 없었다. 여자는 5일 동안 감방에서 쉬다가 일을 하러 동원됐다.”<sup>238</sup>

(2014년 집결소)

## XV. 보건의료 서비스 부재

“누군가 아프면 가족이 약을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의사 진찰을 받을 수 있다.”<sup>239</sup> (2017년 안전부 구류장)

“의료 검진은 없었다.”<sup>240</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약이나 치료는 받지 않았다. 나는 \*\*\*\*\*에 걸려서, 약을 달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못 받았다.”<sup>241</sup> (2014년 안전부 집결소)

“결핵이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구금되지는 않았다. 구금자가 아무리 아파도 약을 주지 않았다.”<sup>242</sup> (2014년 노동단련대)

“심각하게 아픈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sup>243</sup> (2014년 안전부 교화소)

“그 여자가 아플 때 교화소 간호실로 보냈다. 안전부 간호사가 있었다. 반장이 환자방에 가서 환자를 볼 수 있었다. 환자방은 감방이지만 환자가 있는 방인 것만 달랐다. 우리가 있는 감방과 다른 점은 사람들이 바닥에 눕거나, 단차가 있는 바닥에 침대처럼 열명 정도 누울 수 있다는 점이다. 아프면 누우면 된다. 덜 엄격하게 사람을 다뤘다. 간호실에 의료 설비는 없었고, 침대랑 70년대에 쓰던 멸균 장비만 있었다. 주로 주사 바늘이나 수술용 칼이 있었다. 마취약은 없었다. 맹장이 터져서 수술을 한다고 예를 들면, 마취는 안했다. 구금자를 면회하러 교화소에 온 사람들이 수액을 가져오면, 수액은 맞을 수 있었다. 수감자가 수액을 맞아야 하는데 면회객이 가져오지 않으면 간호사가 유리병에 설탕이랑 다른 것을 써서 임시로 만들었다.

면회객이 약, 음식, 비누를 모두 가져왔다. 교화소 자체적으로는 약이나 비누를 주지 않는다. 멸균액이나 주사 바늘도 면회객이 가져와서 의사에게 특정 환자에게 써달라고 해야 한다. 안전부에서 군의를 한 명 배정했다. 간호사는 구금자 중에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골랐다. 군의는 교화소에 상시 있지는 않고 통근했다.

환자가 가족이 면회를 때 뭐가 필요한지 말할 수 있다. 가족은 필요한 약을 다 챙겨오기 쉽지 않았다. 비싸기 때문이

---

<sup>238</sup> KOR/18/0035

<sup>239</sup> KOR/18/0050

<sup>240</sup> KOR/19/0010

<sup>241</sup> KOR/18/0029

<sup>242</sup> KOR/18/0035

<sup>243</sup> KOR/18/0060

다. 교화소 의사한테 뇌물로 중국돈 500원 내지 600원도 줘야 한다. 돈이 있어서 의사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화소에 많았다. 이런 사람들은 환자방에 가서 일을 안하고 쉬었다.

환자방은 단차가 있는 바닥이 있어서, 위쪽에 10명, 아래쪽에 10명이 누울 수 있었다. 담요도 받았다. 10명 정도 있을 수 있는 별도 집중 치료실도 있었다.”<sup>244</sup> (2016년 안전부 교화소)

“구금된 동안 피부병이 있었는데, 치료를 받지 못했다.”<sup>245</sup> (2013년 로동단련대)

“의료 검진은 받지 못했다.”<sup>246</sup> (2011년 보위부 집결소)

“누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결핵 진단을 받으면 병반으로 보냈다. 일주일에 약을 한두 번 주는 것밖에 없었다. 이 약도 밖에 있는 사람이 줘야지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아무 약도 받지 못한다.”<sup>247</sup> (2008년-2010년 안전부 교화소)

### XVI. 재판 없이 로동단련형 구형

“\*\*\*\*\* 안전부 구류장에 이관되서 10일 동안 있었다. 그동안 나를 로동단련대로 보내도록 결정했다. 내 사건 담당 보안원이 있었다. 이름이 \*\*\*\*\*였다. 중국돈 350원을 내면 단련대 3개월 형만 살고 풀려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돈을 줬는데 내 문건은 처리하지 않으면서, 돈을 더 내라는 식이었다. 돈을 더 주지 않자 단련형 6개월을 받았다.”<sup>248</sup> (2014년 안전부 구류장)

“재판 없이 로동단련대 6개월 형을 받았다.”<sup>249</sup> (2014년 안전부 구류장)

“안전부 조사가 종결되고 나서 단련대형을 받았다. 어떤 법 절차에 따른 것인지 전혀 듣지 못했다. 변호사가 없었고 판사를 본 적도 없다.”<sup>250</sup> (2014년 안전부 구류장)

“체포됐을 때, 변호사는 없었고 판사가 있는 재판을 받은 적도 없다.”<sup>251</sup> (2013년 로동단련대 이송 전)

“변호사 없었고 재판도 없었다.”<sup>252</sup> (2013년 로동단련대 이송 전)

“대흥단군 보위부 건물에 도착해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고, 보안서로 이관됐다. 보안서에서... 나는 단련형 6개월을 받았다.”<sup>253</sup> (2012년 보안서)

<sup>244</sup> KOR/18/0078

<sup>245</sup> KOR/19/0036

<sup>246</sup> KOR/18/0077

<sup>247</sup> KOR/19/0034

<sup>248</sup> KOR/18/0029

<sup>249</sup> KOR/18/0035

<sup>250</sup> KOR/18/0075

<sup>251</sup> KOR/19/0036

<sup>252</sup> KOR/19/0010

<sup>253</sup> KOR/19/0030

---

“보안서 감찰관이 체포해서 조사했고, 감찰관이 문건을 썼다. 문건에 내가 어떤 형을 받을지 쓰여 있었는데, 로동단련대 6개월이 적혀 있었다. 감찰관이 나를 단련형을 준다고 문건에 썼다. \*\*\*\*\* 군 보안서 소장이 단련형을 승인해야 했다. 소장이 나한테 떨어진 단련형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이라, 감찰관이 문건을 새로 써서 형을 바꿨다.”<sup>254</sup> (2012년 보안서 대기실)

“\*\*\*\*\*에 배정되어 일했다. 식량과 물을 구해야 했지만, 임금이나 보상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일을 나가지 않기로 했다. 직장 책임자가 안전부에 말했고, 나는 로동단련대에 가야 했다... 구류소에 3일 동안 구금됐다... 내 직장을 담당하는 안전부 지도원이 나를 조사했다. 조사를 2시간 정도 했다. \*\*\*\*\* 로동단련대 2개월 형을 받는다고 써 있는 문건에 서명을 해야 했다.”<sup>255</sup> (2011년 안전부 구류소)

## **XVII. 적법절차 및 공정한 재판 부재**

“조사받을 때 변호사는 없었다.”<sup>256</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구금됐을 때 변호사를 본 적이 없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다. 보위부가 범죄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구금자가 중국에 돈을 벌러 갔다고 확인되면 안전부로 보내거나, 구금자가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했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조사를 받도록 보위부에 남기고 결국에는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로 보내는 결정을 한다. 대한민국이랑 관련된 것은 뭐든지 정치 범죄로 보고, 사람들을 관리소로 보낸다.”<sup>257</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남성] “보위부 구류장에 있을 때 변호사라는 것은 없었다. 변호사가 존재하긴 하지만 형식일 뿐이다. 피고를 돕지 않는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법 제도나 변호사는 일반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sup>258</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남성] “로동교화형을 받고 안전부 교화소로 이송되기 전에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와 판사가 있었다. 총 다섯명이 있었는데, 재판판사,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이 있었고, 또 한 명이 있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다.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텔레비전에서 보는거랑은 완전 다르다. 교화소 로동교화형 1년을 받았다... 변호사가 나를 변호하지 않았다.”<sup>259</sup> (2017년 안전부 구류장)

[남성] “관리소로 사람들을 보낼 때 재판은 없다. 관리소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sup>260</sup>

[남성] “심문 받는 동안 변호사가 있었던 적은 없다. 재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판사 앞에 나를 데려갔던 적도 없다.”<sup>261</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

<sup>254</sup> KOR/19/0043

<sup>255</sup> KOR/19/0037

<sup>256</sup> KOR/18/0050

<sup>257</sup> KOR/19/0002

<sup>258</sup> KOR/19/0050

<sup>259</sup> KOR/19/0050

<sup>260</sup> KOR/19/0050

<sup>261</sup> KOR/19/0049

“조사를 매일 한두 시간 했다. 변호사는 없었다.”<sup>262</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재판에서 재판장이 있었고, 양 옆으로 인민참심원이 있었다. 재판서기, 변호사, 검사가 있었다. 변호사랑 검사가 하는 말을 서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양측 다 내가 2년 6개월 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sup>263</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재판이 있었지만, 나는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느끼기에 인민반이 모인 것 같았다... 변호사가 범죄[용의]자 편이어야 하는데, 변호사는 나를 비방했다.”<sup>264</sup> (2015년)

“변호사를 본 적이 없고, 죄목이 무엇인지 듣지 못했다.”<sup>265</sup> (2015년 보위부 집결소)

“변호사가 배정됐다. 하지만 북측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면,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반박하는데, 북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재판 시작 전에 변호사를 보게 해줬다. 하지만 변호사가 그때 했던 말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북에서 검사는 역할을 하지만 변호사는 역할을 할 수 없다.”<sup>266</sup> (2014년 안전부 교화소)

“2014년 내 재판이 \*\*\*\*\*에서 열렸다. 변호사와 검사가 있었고, 내 형을 선고한 판사가 있었다. 판사 양 옆에 인민참심원이 한 명씩 있었다. 인민참심원은 나한테 북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왜 중국에 갔냐고 물었다. 왜 외국으로 나가서 나라를 배신했냐고 물었다... 변호사가 있었지만 나를 변호하지는 않고, 그저 제도를 설명하고, 내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말했다... 판사는 내가 불법으로 중국으로 국경을 건너 국가를 배신했다고 말했다.”<sup>267</sup> (2014년)

“구금됐을 때 법적 조언을 얻을 수도 없었고, 구금됐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 대응할 수 있는지도 듣지 못했다.”<sup>268</sup> (2013년 안전부 집결소)

“형식적인 재판이었다. 다섯 명이 있었는데, 검사, 판사 말고 세 명이 더 있었다. 내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말하고, 잠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나는 국가에 충성하며 단지 너무 배가 고파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국가에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든 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자백을 한 덕분에 원래 로동 3년 형이었는데, 2년 2개월로 줄었다. 2013년 3월에 교화소에 갔다.”<sup>269</sup>

“재판 때, 변호사가 배정됐다. 재판 있는 날만 변호사를 만났다. 자기가 변호사라고 말했다. 내 사건을 변호하지 않았다. 나에게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정보를 구하지도 않았다. 내 사건에 대해 서로 상의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내 변호사인지 몰랐다. 법정에서 처음 변호사를 봤다.”<sup>270</sup> (2013년 안전부 구류장)

<sup>262</sup> KOR/19/0011

<sup>263</sup> KOR/19/0011

<sup>264</sup> KOR/19/0004

<sup>265</sup> KOR/19/0001

<sup>266</sup> KOR/18/0060

<sup>267</sup> KOR/18/0078

<sup>268</sup> KOR/18/0058

<sup>269</sup> KOR/17/0123

<sup>270</sup> KOR/19/0044

---

“판사가 할 말이 없냐고 물었다... 나를 변호해야 할 변호사가 변호는 하지 않고, 대신 판사에게 내가 나라를 망신 시킨 여자이고 교화소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sup>271</sup> (2012년 안전부 구류장)

“거기 있는 동안 판사나 변호사를 보지 못했다.”<sup>272</sup> (2011년 보위부 집결소)

“20일 있었고, 조사는 10일 했다. 그동안 변호사는 없었다.”<sup>273</sup> (2011년 보위부 구류장)

“전체 과정 중에 변호사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변호사가 있었다고 해도 뭔가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sup>274</sup> (2009)

“북에 있는 딸이 \*\*\*\*\* 도 보위부에 내 아들 행방을 여러 번 물었지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딸이 아들 사건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 보위부원은 내 아들이 무슨 형을 받았는지 모르고 어디로 보내졌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아들이 구금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sup>275</sup>

### ***XVIII. 징역형을 피하거나 감형을 위해서, 또는 더 나은 대우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뇌물을 주는 등의 부정부패***

“나를 체포한 담당자가 자기에게 중국돈 2000원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브로커에게 중국돈 2만원을 주고 나서 남은 돈이 없었다.”<sup>276</sup>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경비대)

“뇌물을 줄 방법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에 가려고 시도했다는 진술 때문에 관리소에 갔을 것이다. 내가 구금됐을 때 담당자가 가족을 찾아갔고, 그 때 뇌물을 줬다.”<sup>277</sup> (2017년 안전부 구류장)

“거주지 군 안전부로 보내져서 교화소에 갔을 것이다. 하지만 삼촌이 보안원이라서 집결소 소장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고, 담배를 줬다. 이후 내 친구와 내가 풀려났다.”<sup>278</sup> (2017년 안전부 집결소)

“집결소에 감방이 7개 있었다. \*\*\*\*\* 당 간부에 연줄이 있어서 맞지는 않았다... 우리 가족이랑 남자 가족이 각각 중국돈 1500원, 총 3000원을 간부에게 냈다. 교양으로 \*\*\*\*\* 풀려났다.”<sup>279</sup> (2016년 보위부 집결소)

“로동단련대 20일 형을 받았지만, 일주일 후에 풀려났다. 내 육촌은 하루 후에 바로 풀려났다. 뇌물을 줘서 빨리 풀려났다. 아버지가 돈을 보냈고, 친척을 통해서 뇌물을 전달했다.”<sup>280</sup> (2016년 로동단련대)

---

<sup>271</sup> KOR/18/0031

<sup>272</sup> KOR/18/0077

<sup>273</sup> KOR/19/0042

<sup>274</sup> KOR/19/0015

<sup>275</sup> KOR/19/0030

<sup>276</sup> KOR/18/0050

<sup>277</sup> KOR/18/0050

<sup>278</sup> KOR/18/0053

<sup>279</sup> KOR/19/0008

<sup>280</sup> KOR/19/0003

“남편이 보위부에 중국돈 5000원을 줬다. 내가 했던 행위를 국가 반역으로 볼 수 있어서 이번에는 더 많은 돈을 줘야 내가 풀려날 수 있었다. 탈북하려다 잡힌 사람이 대체적으로 내야 하는 액수이다. 중국돈 5000원 내지 1만원 정도 내면 풀려난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잡힌 사람은 평균 중국돈 3000원을 낸다.”<sup>281</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남성] “뇌물을 줘서 결국 풀려났다.”<sup>282</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하사급 계호에게 담배와 줄공책을 주고 엄마가 가져 온 음식을 받을 수 있었다. 엄마가 뇌물을 줬다.”<sup>283</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안전부 관행 상 내 거주지 안전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고, 거주지 안전부에서 나를 데리러 와야 했다. \*\*\*\*\*에서 \*\*\*\*\*으로 이관되길 기다리는 동안, 보안원에게 뇌물을 주고 \*\*\*\*\*로 가는 길에 날 풀어달라고 했고, 보안원이 동의했다.”<sup>284</sup> (2015년 안전부 집결소)

“면회는 허용됐다. 하지만 뇌물을 줘야 면회가 됐다.”<sup>285</sup> (2014년 로동단련대)

“다섯째 날부터 인간적으로 대해줬다. 가족이 담당자에게 뇌물을 줬기 때문이다.”<sup>286</sup> (2014년 보위부 집결소)

“시 안전부 구류장으로 이관되서 3개월간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뇌물을 줘서 대신 \*\*\*\*\* 로동단련대로 갔다.”<sup>287</sup> (2013년 안전부 집결소)

“면회도 돈이 많이 드는데, 가족에게 사무실 용품을 가져오라고 시키거나, 교화소 바로 밖에 있는 가게에서 사오라고 하기 때문이다. 교화소 밖에 있는 가게는 일반 가게보다 다섯 배 내지 여섯 배 정도 비싸다. 작은 탁자, 담배, 종이, 책, 페인트 등 교화소에서 필요하고, 교화소 바로 바깥에 있는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사오라고 한다. 가족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면회를 하지 못할 수 있다. 또 구금된 가족은 당국의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구금된 가족이 학대를 받을까봐 걱정한다.”<sup>288</sup> (2013년 안전부 교화소)

“지도원이 나에게 담배나 뇌물을 주는 등 잘하라고 했다. 로동단련대 관리자도 담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난 그럴 수가 없었다. 단련대에 있는 동안 관리자에게 위협을 당했고 맞기도 했다. 머리를 때렸다. [구타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울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했다.]”<sup>289</sup> (2013년 로동단련대)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구금자들이 식당에서 일하려면 원가를 해야 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면회 때 가져 온 음식을 지도원에게 준다.”<sup>290</sup> (2013년 로동단련대)

<sup>281</sup> KOR/18/0004

<sup>282</sup> KOR/19/0049

<sup>283</sup> KOR/19/0004

<sup>284</sup> KOR/19/0001

<sup>285</sup> KOR/18/0035

<sup>286</sup> KOR/19/0046

<sup>287</sup> KOR/18/0058

<sup>288</sup> KOR/19/0032

<sup>289</sup> KOR/19/0036

<sup>290</sup> KOR/19/0036

---

“5년 형을 받았다. 하지만 삼촌이 뇌물을 줬다. 예심원인지 판사인지에게 줬고, 5년 형이 3년 형으로 줄었다.”<sup>291</sup>  
(2012년)

“우리 세 명 수감자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줬다. 이틀 혹은 사흘에 한 번씩 줬다. 그리고 [중국에 돈을 보내도록] 전화를 하라고 명령했다.”<sup>292</sup> (2012년 안전부 집결소)

“첫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여러 곳에 동원되서 일을 했다. 가족이 로동단련대 소장에게 가서 관계자에게 뇌물을 줬고, 식사를 배급하는 일을 하도록 배정됐다. 식사 배급하는 일을 하면 밥을 조금 더 먹을 수 있다.”<sup>293</sup> (2012년 로동단련대)

“북중을 여러차례 오갔다. 2011년에 처음 잡혔다. 두만강 국경경비대에 돈을 주고 풀려났다.”<sup>294</sup> (2011년)

“로동단련대에 열흘 있다가 집으로 갔다. 그리고 북측 돈 10만원을 로동단련대에 주고 아예 풀려났다.”<sup>295</sup> (2011년 로동단련대)

“로동교화형을 받을 뻔했다. 공민증도 빼앗기고 머리도 밀고 몇 년 교화를 갈 뻔했다. 하지만 \*\*\*\*\*이 연줄이 있어서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sup>296</sup> (2011년 안전부)

## **XIX. 휴식 및 실외 활동**

“18일 간 구금되어 있을 때 딱 세 번 감방에서 나와서 해를 볼 수 있었다. 운동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이것도 내가 중국에 100일간 구금되었을 때 전혀 해를 보지 못해서 얼굴이 창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sup>297</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남성] “거기 있는 내내 외부 공기를 맡아본 적이 없다.”<sup>298</sup> (2017년 안전부 구류장)

“신선한 공기를 맡을 기회가 없었다.”<sup>299</sup> (2016년 보위부 구류장)

“신선한 공기를 맡거나 해를 볼 수 없었다. 병원에 갈 때나 해를 볼 수 있었다.”<sup>300</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

<sup>291</sup> KOR/18/0032

<sup>292</sup> KOR/18/0031

<sup>293</sup> KOR/19/0043

<sup>294</sup> KOR/18/0081

<sup>295</sup> KOR/19/0037

<sup>296</sup> KOR/19/0042

<sup>297</sup> KOR/19/0002

<sup>298</sup> KOR/18/0050

<sup>299</sup> KOR/19/0010

<sup>300</sup> KOR/19/0011

## XX. 이의 제기 제도 부재

[남성] “보위부에 끌려가서 구타를 당한 남성이 있었다. 외음부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 부모가 해당 보위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구타를 한 보위원은 면직됐다. 하지만 이의 제기는 위험할 수 있다. 내가 구류장에서 보안원에게 맞았고, 군당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가정해보자. 보안원이 비판 받을 수도 있지만, 행동이 개선되기보다 내가 더 심하게 고문을 받고 맞을 수도 있다. 구금자 가족이 군당위원회 신소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검찰소 검사가 구류장에 방문해서 구금자에게 인권 침해 여부를 묻고 이야기 나눌 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사들에게 경험을 이야기하면 더 힘들어진다.”<sup>301</sup>

“계호를 상대로 불만을 접수할 수 없었다. 우리가 불만을 접수하면 복수했을 것이다.”<sup>302</sup> (2015년 안전부 구류장)

“방망이를 들고 왔다. 감방 수감자 중에 반장이 있었다. 반장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다... 나는 말대꾸를 하면 안됐다. 대답을 하든 대답을 하지 않든 무조건 맞았다. 뺨을 맞았다. 발차기를 당했다. 똑바로 서 있지 않는다고 온 몸을 발로 찼다. 감방 안 수감자 모두가 그날 맞았다. 다음날부터 나는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내 상태를 전했지만, 무시당했다.”<sup>303</sup> (2014년 안전부 집결소)

“그 사람이 구금자가 아무 이유없이 구타를 당한다고 평양 당국에 신소를 냈다. 당국에서 인권 침해 관련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우리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집결소 소장이... 결국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평양에서 검열을 하러 나왔다. 평양에서 온 사람이 우리는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우리 구금자들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를 구타한 사람은 소대장이었는데, 집결소 소장이 숨겨줬다. 우리를 구타한 사람은 나중에 돌아와서 일했다. 집결소 소장은 소대장이 기여한 바가 많이라며 숨겨줬다. 소대장은 징계 조치를 받긴 했지만, 군인 신분은 유지했다. 소대장 지위를 박탈당했고, 이후 우리를 담당하지 않았다.”<sup>304</sup> (2014년 안전부 집결소)

[남성] “\*\*\*\*\*보위부 구류장에 열흘 있는 동안 구타를 당했지만 신소를 하지는 않았다. 도움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sup>305</sup> (2017년 보위부 구류장)

<sup>301</sup> KOR/19/0050

<sup>302</sup> KOR/19/0011

<sup>303</sup> KOR/19/0004

<sup>304</sup> KOR/19/0004

<sup>305</sup> KOR/19/0050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Palais des Nations, CH1211 Geneva 10 – Switzerland
- *Telephone*: +41 (0) 22 917 90 00 • *Fax*: +41 (0) 22 917 90 08
- *Website*: [www.ohchr.org](http://www.ohchr.org)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서울)**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03188)
- *이메일*: [seoul@ohchr.org](mailto:seoul@ohchr.org) • *웹사이트*: <https://seoul.ohchr.org>